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 학위논문

NFT와 저작권

- NFT 실례와 거래의 관점에서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김 형 지

NFT와 저작권

- NFT 실례와 거래의 관점에서

지도교수 정 상 조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김 형 지

김형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원장 박준석 (인)

부위원장 이동진 (인)

위원 정상조 (인)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세계의 산업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가 된 NFT와 관련하여 저작권은 항상 이슈가 되었으나, 이를 단순한 이슈에서 확대하여 저작권 관점에서 발행에서 판매까지의 단계별로 검토해 볼 기회는 잘 없었다.

NFT는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암호화 자산으로서, 권리 증명서로서, 온라인 재화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NFT 발행시에는 스마트계약,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민팅을 진행하고, 당사자간 혹은 이용약관에 따라 NFT 및 대상 저작물의 이용 범위 등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NFT 발행에 대한 해외 실례를 메타버스, 수집형, 예술형, 엔터테인먼트, 게임, 출판업, 디파이형의 7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무권리자 NFT 민팅에 대한 미국의 미라맥스 대 쿠엔틴 타란티노 사건에서와 같이, 과거의 콘텐츠 제작계약은 NFT를 고려하지 못하고 체결되었는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창작물에 대해 당사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 등이 귀속될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권리자 민팅시 대상 저작물 복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저작권 제한 규정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NFT는 유통을 본질적인 전제로 하여 생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NFT에 전형적인 민법상 소유권 및 저작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NFT 발행자, 보유자들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 저작물을 자유롭게 상업화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BAYC 거래 구조 및 그 약관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국내외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을 살펴보며 주로 소유 관계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약관은 DMCA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적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주요어 : NFT, 저작권, NFT해외사례, NFT라이선스, BAYC

학 번 : 2011-2145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NFT의 개념과 실례	3
제 1 절 NFT의 개념 및 성격	3
1. NFT의 기술적 개념	4
가. ERC-721 표준	
나. ERC-1155 표준	
다. 기술적 특징에서 발생하는 NFT 시장 가치	
2. NFT의 법적 성격	7
가. 암호화 자산으로서의 NFT	
나. 화체된 권리 증명서로서의 NFT	
다. 온라인 재화로서의 NFT	
제 2 절 해외 NFT 발행 사례 및 NFT의 종류	12
1. 메타버스와 NFT	12
2. 수집형 NFT	15
가. 수집형 NFT 사례	
나. 수집형 NFT에 대한 저작권법상 검토	
3. 예술과 NFT	18
가. 예술 작품 NFT 거래의 활성화	
나. 오프라인 미술관에서의 NFT 발행	
다. NFT를 활용한 미술품 거래 사례	
4. 엔터테인먼트와 NFT	22

가.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SKE48’ NFT 트레이딩 카드 발행	
나. 중국 아티스트 A Duo의 NFT 이용한 곡 발매 등	
다. 락밴드 킹스 오브 리온의 NFT 앨범 발매	
라. 일본 NFT 마켓플레이스 ‘라쿠텐 NFT’	
마. SIAE(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협회)와 블록체인 플랫폼 알고 랜드를 통한 NFT 출시	
5. 게임과 NFT	27
가.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 NFT	
나. 일본 게임 퍼블리셔 SEGA의 게임 지식재산의 NFT 판매	
다. Play to Earn과 게임 NFT	
6. 출판업계에서의 NFT 발행 사례	31
7. 디파이형 NFT	32

제 3 장 NFT 발행·유통과 저작권의 관계 34

제 1 절 발행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34
1. 스마트 계약의 체결	34
가. 스마트 계약의 개념	
나. 영국의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지위에 관한 법적 성명 발표와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2. NFT의 발행 절차	37
3. NFT 발행시 발행자의 권리	38
4. 무권리자의 민팅	40
가. 미국 법원 사례	
(1)미라맥스 대 쿠엔틴 타란티노 사건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et al)	
(2)로카펠라 레코드 대 데이먼 대시 사건(Roc-A-Fella Records Inc. v. Damon Dash)	
나. 혀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NFT 발행시 법적 문제	

- (1)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 (2)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
- (3)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4) 그 밖의 공유저작물

제 2 절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46
1. NFT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문제	46
2. NFT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	47
가. NFT 발행자의 권리	
나. NFT 보유자의 권리	
(1) NFT 자체에 대한 법적 권리	
(2) NFT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다. Crypto BAYC 사례의 분석	
(1) 개관	
(2) BAYC NFT 보유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의 분석	
(3) NFT 보유자들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	
3. NFT 플랫폼의 약관 규제 적용 범위: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 비교	63
가. 오픈시의 경우	
나. 슈퍼레어의 경우	
다. 업비트의 경우 (국내)	
라. 요약 및 시사점	
4. NFT 거래 플랫폼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법적 책임 적용 여부	73
가. 중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판결(항저우인터넷병원)	
(1) 사안의 개요	
(2) 원고 적격의 문제	
(3) 저작권법상 NFT 디지털 파일의 거래 성격	
(4) NFT 플랫폼 운영사 피고의 법적 성격과 법적 책임	

(5) 중국 판결의 시사점
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적용 여부 관련 검토

제 4 장 결론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이른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서,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출시된 ‘크립토 kitties(CryptoKitties)’ 게임을 그 유래로 하는데, 특히 2017년 11월 경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NFT는 최근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여 2021년 거래량이 미화 23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차세대 SNS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거래 수단으로 더욱 각광 받을 것임이 예고되는 등, 이미 현실화된, 그리고 잠재적인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또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형체가 없는 NFT를 이용한 거래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법적 관념이나 법리와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임이 분명하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NFT에 원본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어느 범위에서 화체되어 있는지, NFT가 판매될 때 양도되는 권리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한 것 등으로, 아직까지 일의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서의 전망은 상당히 밝아 보인다.

NFT 관련 사업과 시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

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 모든 주체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NFT 발행부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저작권 관점에서 NFT와 그 대상 저작물(저작물이 아닌 경우도 상당하겠으나 본고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칭한다)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NFT 사업에서 합리적으로 법리 분석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한국의 대표적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럭셔리 브랜드 G사의 가방이 동일 모델인 오프라인 모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한정판 물품들도 출시되어 대거 판매되고 있다. 어깨에 멀 수도, 소지품을 넣을 수도 없는 데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럭셔리 가방 구입을 위해 몇 백만 원을 투자하는 새로운 MZ세대의 소비 형태에서만 보더라도 향후 잠재적인 NFT 시장이 상당히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FT는 그 자체로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일 뿐이고, 반드시 소유권이 화체되었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정표할 필요는 없다. 본고에서는 주로 NFT와 결합한 미술저작물, 컴퓨터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 등 대상 저작물이 원본이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NFT에 대하여 해당 대상 자산의 소유권 내지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NFT 대상 저작물을 저작권 법리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원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소유권 및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고, 창작자가 NFT로 작품 또는 제품을 민팅하거나 NFT를 판매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개별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며, 저작권도 일정 범위에서 이전 혹은 라이선스가 부

여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관계 외에도 각 플랫폼에게 부여되는 사용 권리도 고려해야 하는 등 간단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NFT는 작품 또는 제품을 NFT로 민팅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경매 등으로 이를 극대화 시키는 작업인데, NFT 자체가 바로 그 작품 또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창작물이 NFT화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무권리자가 무단으로 NFT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애초에 대상물이 진품이 아닌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실제 권리자가 아니거나, 대상물이 진품이 아님에도 NFT화 된 허위정보가 진품처럼 유통되게 되어 소비자 및 권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존재하며, NFT가 활성화 되면서 점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직 관련 법리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각국과 각 업계에서 NFT를 이용한 사업은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논의와 사건이 예측 못한 범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NFT에 관한 사례 및 현황과 그 저작권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또는 법령 수립 방향에 대하여 그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 2 장 NFT의 개념과 실례

제 1 절 NFT의 개념 및 성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큰), 즉 NFT를 이용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법적 정의는 명확히 내려지고 있지 못하다. 기술적으로는 관련 핵심 기술을 반영하여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하고 고유 식별코드가 불변하며, 고유한 아이디와 메타데이터를 콘텐츠에 할당하는 기술’¹⁾ 정도로 설명될 수 있겠다. 다

NFT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재화로서의 성격이 있으면서도, 특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로서의 성격도 있고, 거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등 기존 법제 내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설정이다. 아래에서는 NFT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NFT의 법적 성격을 최대한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1. NFT의 기술적 개념

일반적인 블록체인(Blockchain)상의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한 토큰(FT, Fungible Token)이다. 비트코인(BTC), 이더(ETH) 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20 표준에 따라 발행된 토큰 등 일반적으로 발행 및 거래되어오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큰은 상호 서로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화폐’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며, 다른 사람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NFT는 이른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코인 기술을 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는 달리 NFT에는 또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암호화 주소가 부여되며, 암호화된 거래내역이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겨지게 된다. 탈중앙화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픈시(Opensea), 슈퍼레어(SuperRare), 라리블(Rarible) 등 각 마켓플레이스 내에서만 유

1) 김시호,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KISA Report, 2021. 8. 11.

통됨을 특징으로 하며 다른 마켓플레이스 간에 유통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NFT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중 이더리움(Ehtereum)으로 발행 및 유통되고 있고, 그 중 토큰 표준인 ERC-721, ERC-115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다.

가. ERC-721 표준

ERC-721 표준의 경우 NFT에 최적화된 대표적인 이더리움 표준규약으로서 특정 플랫폼상에서 사용되는 NFT이다. 대체 가능한 ECR-20과는 달리 플랫폼별로 창출하여 사용하는 각각의 토큰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며, 그 고유성도 플랫폼 내에서 보장되는데, 이로 인해 수집형 토큰에서 활용되고 있다. 토큰의 고유성은 Token ID로 표현되는데, 각 Token ID에 대한 메타데이터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지정해서 해당 Token ID가 외부 세계 어떠한 특정한 정보나 자산과 관련이 있는지를 토큰에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NFT에 사용되는 대상 저작물 등을 저장할 때 오프체인에 저장한다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인 아마존 S3 버킷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킹 등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NFT는 IPFS (InterPlanetary File System)라는 탈중앙화 표방 분산형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데이터센터에 콘텐츠를 요청하는 대신 콘텐츠 자체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IPFS는 파일을 콘텐츠 ID(Content Identifier, CID)라는 문자열 집합으로 변환하는데, 모든 컴퓨터가 분산 서버의 역할을 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Peer-to-Peer('P2P') 방식의 탈중앙화 웹²⁾이며, 파일 일부만 변경되더라도 CID가 변환하게 연동되어 있어 NFT의 고유한 메타데이터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여주므로 오픈시 등 대표적인 NFT 플랫폼에서 선호되

2) 노경탁, NFT,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유진리서치센터, 2021, 11면

고 있다.

이와 같은 ERC-721은 수집형 토큰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토큰 자체보다는 게임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양이를 교배하여 고양이를 수집 및 유통하는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들 수 있다.

나. ERC-1155 표준

또 다른 이더리움 표준규약으로서 NFT에 활용되는 ERC-1155 표준³⁾의 경우 다중토큰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ERC-721)과 대체 가능 토큰(ERC-20)을 하나의 스마트 계약에 담아 혼합 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성한 토큰 표준이다⁴⁾. 이는 양 토큰을 무한히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ERC-721과의 차이점으로, ERC-721은 토큰 타입별로 개별적인 계약(Contract)과 거래가 요구되지만, ERC-1155는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효율성을 갖는다. 또한 ERC-1155는 토큰 일괄전송이 가능하여 게임 아이템과 같은 다수의 거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송 시 주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안전거래규범(Safe transaction rule)에 따라 되돌릴 수 있어 보안에도 더욱 적합하며 NFT 발행시 사용되는 연료비용인 가스비(Gas fee)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다. 기술적 특징에서 발생하는 NFT 시장 가치

이러한 NFT 발행시 보호되는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저작물 자체가 아닌 그 저작물 위치를 특정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⁵⁾. 이와 같이 기술

3) 네이버 지식백과,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代替不可能-], 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박명기, ‘더 앞서가는 ‘이더리움 ERC-1155 엔진토큰’ 메인넷에 떴다’, 한국경제, 2018. 7. 30.

적으로 대체불가능성을 구현하여 디지털 토큰화하여 유·무형적 재산의 일정 권리를 쉽게 신뢰관계 있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스마트계약에 따라 판매, 재판매가 발행자가 설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NFT의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NFT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드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존 산업군에서도 NFT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미술시장과 같은 희소성과 고유성이 작품의 가치로 인정받는 분야에서 과거에는 이를 디지털화하거나 널리 상업화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고 일회성으로 판매 후 휘발되었으나 NFT를 통해 그 가치를 온라인에서 최대치로 영구히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수집형 NFT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일부 수집광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NBA 트레이딩카드와 같은 것들이 NFT로 수면화되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게임에서도 그 고유한 아이템을 널리 NFT로 발행함은 물론 Play to Learn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게임 산업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2. NFT의 법적 성격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분석되는 NFT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술적 개념을 기반으로 실제 NFT 발행 사업 및 거래계에서 NFT가 어떠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해봄으로써 그 법적인 성격을 다소나마 실질에 맞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가. 암호화 자산으로서의 NFT

블록체인(Blockchain)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5) 오혜민, 블록체인 기업 ‘Galaxy’, NFT 라이선스에 대한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 제18호

거래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⁶⁾라고 하며, 서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통제하는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동일한 거래원장 사본이 보관되는 디지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⁷⁾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암호화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서 소유권 기타 권리를 표장하는 증표 내지 대상물로 본다. 유형물인 재산은 소스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 계약으로 조작, 통제가 가능하며 이를 ‘스마트 재산(property)’라고도 부른다⁸⁾.

NFT는 주로 대상 저작물은 IPFS 등 외부에 두고 대신 그 메타데이터와 링크 등 연결 정보가 스마트계약에 기록되어 대상 저작물인 디지털 콘텐츠는 NFT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상 저작물이 유형물이든, 무형의 데이터이든 간에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암호 자산이다.

나. 화체된 권리 증명서로서의 NFT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의미하는 ‘분산’된(Distributed)과 은행·사업체 등에서 거래 내역을 적은 ‘원장’(Ledger)을 결합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이다⁹⁾. 분산원장 기술은 중앙집중식이 아닌 여러 위치에 분산된 저장 장치에 거래 관련 기록이 보존되고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이중 지급(double spending) 위험 및 위·변조를 막는다. 스마트 계약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이용해 계약의 조건을 자동 구현하는 코드로 자체 실행 계약을 작성한다.

6) Aaron Wright & Primavera De Filippi, DECENTRALIZED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RISE OF LEX CRYPTOGRAPHIA [12-Mar-15], 6-7면

7) David Schatsky and Craig Muraskin, Beyond Bitcoin: Blockchain is Coming to Disrupt your Industry,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5, 2면

8) Aaron Wright & Primavera De Filippi, 위 논문 33면

9) 현소진, NFT의 발행 및 저작권적 쟁점의 논의, 경영법률 제32집 제2호, 2022, 438면

NFT도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NFT는 고유한 Token ID가 부여되며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다.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위해서 인도를 요구하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라는 공적장부를 필요로 하는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기록이다. 한편, NFT는 대상이 되는 자산이 그대로 포함되지 않고 최초 발행시부터 양도가 될 시 그 판매자, 취득자에 대한 정보가 기술적으로 상세히 기록되게 된다¹⁰⁾. 다만 현실에서 예술 작품의 소유자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듯이 온라인에서 NFT 보유자가 공개적으로 대상 저작물의 소유자로 외부에 비춰지며, 이러한 점에서 NFT의 폭발적인 시장가치가 발생¹¹⁾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술 자체로 효용성이 있다.

예컨대 NFT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저작물일 경우 NFT의 구성은 (i) 저작물 원본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인 대상 저작물, (ii) 그에 대한 제목, 저작권자, 디지털 콘텐츠의 위치 등을 기록하는 메타데이터, (iii) 권리 관계 및 로열티 관련 내용이 나타나는 코드인 스마트 계약 등으로 구성된다¹²⁾. 최초 NFT 발행시 NFT의 보유자가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였는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결정되며, 이러한 권리가 이전하는 내역이 NFT에 기록되게 된다.

부동산이나 그림 등 현실 저작물 자체를 대상으로 한 NFT를 발행할 경우에도 NFT는 소유권 등 현실의 법적 권리를 표상하기보다는 NFT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만 표상하게 된다. 다만, 민법 문언에 따르면 NFT보유자가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법상 정형적인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와 달

10) 윤종수·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합의와 법적 보호, 법조 제70권 제6호(통권 제750호), 2021, 216면

11) 정진명, 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학 제100호, 67면, 2022. 9. 29.

12) 혼소진, 위 논문, 444면

리 NFT는 근거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 발달의 소산이고 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른바 소유권(을 표상한 디지털 권리)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채권적 권한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디지털 콘텐츠 자산을 대상으로 한 NFT는 유형물인 자산이 아니므로 NFT와 대상 저작물 각각의 소유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이를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성해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구성 혹은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법적 보호 측면에서 불안정한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이 되므로 도중에 복제 등 제3자의 침해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쉽고 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성을 위한 복구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점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실물 자산을 대상으로 하든, 디지털 콘텐츠 자산을 대상으로 하든, NFT는 자산과는 분리된 디지털 장부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기존의 현실법상 권리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NFT 자체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다. 온라인 재화로서의 NFT

NFT가 토큰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현실의 재산이든 디지털 콘텐츠든 제한이 없고, 디지털이라는 형식에 의해 표현이 가능하면 모두 토큰화하여 발행할 수 있되,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함이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분리된 NFT 역시 그 자체로 일반적인 블록체인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고유한 Token ID부여를 통해 고유한 가치를 대체불가능성을 통해 구현하게 된다. 대체 및 복제 등이 어려운 NFT는 그 자체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세적 견해이며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를 최대치로 확산시키고 거래가 이어지면서 그 가치가 더 증폭될 수도 있게 되는 등 본격적

인 디지털 경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NFT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의 권리 관계를 사실상 증명하여 기록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권리 관계 및 그 변동 내역을 일견에 파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는 NFT의 자산으로서의 신뢰성과 가치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 NFT는 디지털 파일이므로 대체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판매 시에도 명시적으로 이용 약관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 직접 이전된다고 보기是很 어렵게 되는데, 유일한 효과로서 NFT 보유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다른 제3자의 소유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영국에서는 “Women in Blockchain Talks”라는 NFT 설립자가 해커가 자신의 특정 NFT를 절도(theft)하자, 법원에 특정된 크립토월렛 계정과 오픈시의 NFT 해당 계정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때 영국 법원은 NFT가 대체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property)으로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¹⁴⁾. 다만 이에 대해서 계정 정지의 대상인 자산인지 여부만 판단하였을 뿐 실제 민법상 개념인 ‘재산’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아직까지 NFT 거래소에서 일정 방식을 택한 NFT에 한해서(예컨대 특정 이더리움 프로토콜 등)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나 탈중앙화를 표방한 자산이니만큼 향후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 상호 간에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산업군과 새로운 산업군에서 모두 환영받고 있는 NFT의 발행사례 및 종류에 관해 살펴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잠정적 저

13) 정진명, 위 논문, 77면

14) Shanti Escalante-De Mattei, NFTs Recognized as Property in the UK Following OpenSea Case, Artnews, 2022. 4. 29.

작권 이슈가 어떻게 현실 거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제 2 절 해외 NFT 발행 사례 및 NFT의 종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에서는 저작권과 밀접히 연관된 미술계, 게임 업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에서 NFT를 적극 활용하면서, 크립토키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창작하거나, 기존 권리나 상품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알고랜드 사안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던 권리를 권리자가 보유·행사하게 하는 등 원 권리자가 조금 더 자유롭고 넓은 범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일조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NFT는 그 바탕이 되는 비즈니스 및 플랫폼, 대상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메타버스 (Metaverse), 콜렉터블(수집형), 예술(Art),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게임(Game), Defi(디파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대략의 분류라고 하겠다¹⁵⁾. 이하에서는 그 유형별로 대표적인 해외 등에서의 발행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메타버스와 NFT¹⁶⁾

메타버스 내에서 물건이나 특유의 세계를 만드는 크래프트 계열의 메타버스는 사명까지 변경한 구 페이스북, 즉 메타의 ‘호라이즌’,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하여 가상 라

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최재식 외, 2021

16) 아모 겐스케·마사다 마사후미 외, NFT로 부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 알에이치코리아,

이브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크래프트 게임 계열 메타버스인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도 존재한다. 이들 메타버스는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 현실형 메타버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프로깅 메타버스¹⁷⁾가 아닌 가상공간형 메타버스이다. 가상공간형 메타버스는 결제 등이 앱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폐쇄형 메타버스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들 메타버스에 NFT를 도입함으로써 메타버스 내에서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디지털 아이템을 플랫폼 외부에도 이동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가상현실형 메타버스 내에서는 게임 아이템, 부동산, 음악, 미술작품, 옷과 악세사리, 가방 등 패션아이템 등 현실세계와 유사한 다양한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판매,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아이템, 즉 개인 재산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바, NFT를 통해서 이러한 관리와 유통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더샌드박스, 크립토 복셀(Cryptovoxels),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호의 대상이다.

이 중 크립토복셀에서는 소유한 부동산의 활용이 자유롭다. 즉 본인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지어 상업적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토지 소유자 본인이 보유한 NFT 아트를 전시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NFT의 도입은 메타버스의 구축 자체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앞서 살펴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관련 권리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의 경우 특정 주체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메타버스와는 달리 중점적인 관리조직이 없는 분산화된 플랫폼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내의 랜드를 NFT로 판매하는데, 해당 랜드에서는

17) 물론 이들 증강현실형 혹은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서도 NFT의 발행 및 활용을 관념해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도시 내에서 이동을 하고 각종 체험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경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있다. 암호화폐 '마나(MANA)'를 토대로 메타버스 경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콘텐츠 구분을 위한 지역(Districts)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역은 쇼핑, 교육, 게임, 음악, 카지노, 사이버펑크 등을 들 수 있다.

디센트럴랜드에서는 현실세계와 다르지 않은 상업적 이벤트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미술품 경매업체로 유명한 소더비가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갤러리를 설립하여 NFT 경매를 홍보하였고, 코카콜라는 2021년 7월 NFT를 출시하면서 가상 루프탑 파티를 진행하는 등의 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계한 '코카콜라 제로 슈가 바이트'라는 메타버스 전용 음료를 출시하는 등 활발한 NFT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NFT의 경우 현실세계에서와 유사한 NFT 관련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현실세계의 콘텐츠나 디지털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NFT의 경우 이를 보유하지 않은 제3자가 마치 해당 NFT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사 제품을 복제, 전시, 배포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세계 운영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형 NFT는 디지털 아이템을 메타버스 플랫폼 외부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 남다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생된 NFT들은 약관 등을 통해 수수료, 권리 관계, 해당 게임 등을 메타버스 내부의 것으로 한정지었다. 이는 현재 발행된 대부분의 NFT가 가

지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한데 기술적으로도 각 메타버스별 데이터 파일이나 개발사양이 다른 상황에서 플랫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NFT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NFT 시장 현황은 애초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여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NFT의 본질적인 지향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 등 저작권법적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법적인 해결이 더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으로 작용하기도 하겠다.

2. 수집형 NFT

가. 수집형 NFT 사례

NFT는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성격에 따라 발행량을 한정하고, 메타데이터 및 Token ID 등을 통해 각 보유자가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희소성 및 가치에 대한 잠재성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극대화 시킨 것이 바로 수집형, 이른바 콜렉터블 NFT인데 이는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났다.

수집형 NFT란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토くん으로서, 크립토펑크,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Bored Ape Club, ‘BAYC’) 등 인물이나 캐릭터 등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필 등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NFT 형태를 말한다.

이더락(EtherRock)¹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수집형 NFT로서, 서로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돌덩이 형상의 클립아트가 그 근간인데 2017년 오로지 100개에 한정되어 발행되어 그 희소성 가치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 기고문

가 높게 매겨졌다. 돌덩이 그림만으로 볼 때 어떠한 예술적 가치라던지 별다른 효용성을 얻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기리에 판매되어 2021년 8월 경 한 ‘이더락’이 130만 달러(400 이더리움, 한국 돈 당시 15억 1,700여 만원)에 판매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대표적인 수집형 NFT 중 2017년 6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라바랩스가 발행한 크립토펑크는 예상을 뛰어넘는 큰 인기를 끌었다¹⁹⁾. 한국에도 ‘한국형 크립토펑크’라 불리우는 ‘도지사운드클럽 프로젝트’가 있다. 도지사운드클럽은 메이츠라는 총 1만 개의 NFT 아트를 모아 놓은 벌크형태의 아바타 컬렉션이다. 1만 개 모두 서로 다른 특성으로 조합된 24픽셀×24픽셀 크기의 ‘음악 듣는 개’라는 컨셉의 아트 캐릭터들이다. 클레이튼 최초로 여러 타입과 속성을 무작위로 조합하여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조합한 제너레이티브 아바타 NFT 컬렉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이트 20개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커뮤니티에 목소리(개짖는 소리)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도지사운드 클럽 메이트 NFT를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교모임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고 메이트는 멤버십 ID이자 투표권의 기능을 한다. 2021년 10월 18일 ‘DSC메이트 #7621’이 100,000 클레이튼(당시 시세 한화 1억 9천 만원 가치)에 거래되었다. 도지사운드클럽은 메이트에 가상자산 믹스, 채굴 등을 도입하고 NFT를 변신하게 하는 물약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또 하나의 유명 수집형 NFT인 NBA 탑 샷(NBA Top Shot)은 대퍼랩스(CryptoKitties 발매사와 동일 회사)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 NFT 플랫폼이며, 이는 NBA가 라이선스할 수 있는 유명 NBA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NFT 형태로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다²⁰⁾. NBA 탑 샷에서 수집 가능한 내용은 플로라는 블록체인 상에서 NFT로 생성되고 발행되는 디지털 전용 토큰화된 비디오 클립이다. 교환은 공식

19) <https://signal.sedaily.com/NewsView/2675K7RTBL/>

20) Hoopshype, The most expensive NBA Top Shot moments so far, 2021. 3. 18.

NBA 탑 샷 마켓플레이스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디지털 비디오 클립에 대해 영구적으로 소유권과 ‘출처’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수집품 구매시 동등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각 수집품은 고정된 소매가 (예시: 199 미국달러)로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모든 매출의 5%가 NBA 탑 샷에 지급되게 된다.

이 NBA 탑 샷 각 콜렉터블의 가치는 거래자들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 그 가치 부여 요소에는 등장 플레이어의 인기, 발행된 콜렉터블의 수량, 일련 번호, 그리고 ‘계층’(수집품의 희귀성을 나타내는 범주)이 포함되게 된다. 예컨대 가장 많이 팔린 20개의 수집품 중 10개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유명 플레이어의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르브론 제임스 음주 수집품은 20만8000달러에 판매된 반면 일부는 12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일련번호 ‘7’ 콜렉터블은 내용은 같지만 일련번호가 다른 콜렉터블보다 비싸다. 콜렉터블은 또한 일반, 희귀, 전설, 궁극의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는 동일한 내용의 발행 수량에 따른다.

이를 통해 대퍼랩스는 2021년에만 3억 5백만 달러 기금을 벌어들였는데, 그 투자자들로 마이클 조던과 같은 잘 알려진 스포츠 유명인사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스포츠 투자자들을 포함되어 있어 그 홍행에 도움을 받았다.

나. 수집형 NFT에 대한 저작권법상 검토

앞서 살펴본 이더락, 도지사운드클립 등 수집형 NFT는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포맷은 같지만 각기 다른 모양이나 특성을 가진 그림이 최근에는 수천, 수만 개까지 존재하도록 발행되며, 똑같은 그림은 하나도 없다. 다만 수집형 NFT의 바탕이 되는 콜렉터블 작품은 로고와 같이 단순하고 작은 그래픽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바,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기존 한국 저작권법의 법리 및 선례상 단순한 도안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나 상품명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안은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획일적인 표현이 어렵고, 너무 단순해서 다른 기본적인 도형과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²¹⁾. 반대로 실용적 기능성보다는 사상 및 감정의 표현에 중점을 둔 도안, 그리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도안, 즉 다른 기호나 도형과는 구별되는 최소한의 특징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물성 인정을 한 경우가 많았다²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더락과 같이 작품별로 구별이 어렵고 창작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도록 기계적으로 무작위 발생된 NFT 프로필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기도 어려울 것이나, BAYC의 특정 아트워크와 같이 상호 구별이 잘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NFT 탑 샷과 같은 경우에는 콜렉터들이 하이라이트 영상이므로 그 자체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3자가 이를 침해해서 NFT 게시 등에 활용했을 때 권리 침해를 주장해 볼 수 있겠다.

3. 예술과 NFT

가. 예술 작품 NFT 거래의 활성화

NFT를 활용한 디지털아트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작품을 스캔이나 촬영을 통해 디지털로 단순히 전환시킨 전환형, 오프라인 작품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에 움직임, 소리, 이미지 변형을 가하는 부가형²³⁾, 처음 제작시부터 온라인에서 디지털

21) 광주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나119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0785 판결 등

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로 창작된 창작형 등으로 구분²⁴⁾한다.

지난 2021년 3월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가 비플(Beeples)이 만든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6,934만 달러(당시 가액 약 785억 원)에 낙찰되었는바, 이는 크리스티 경매 역대 상위 3번째 금액이었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크리스트 경매는 전통적인 미술 시장을 대변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다고 보인다. 이후 Monsieur Personne라는 해커가 이 작품의 복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였는데 이를 원작으로 알고 구매한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하였다²⁵⁾.

이전에는 오프라인 예술 작품이 디지털화 된 경우나, 애초부터 디지털 아트였던 경우 모두 온라인상 복제가 용이하기에 그 재산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NFT의 위조가 어렵고 대체 불가능한 특성에 따라 해당 작품에 원작 인증 및 특정한 권리 부여, 희소성 가치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NFT와 결합된 디지털 아트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예술 작품이 NFT화 됨으로 인해 지분 거래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NFT는 필요시 온라인상에서 현금화하기도 용이한 편이기에 예술 작품의 자산 가치를 다방면으로 높였다.

이에 이러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NFT 판매 마켓플레이스들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NFT까지 아우르는 오픈시는 물론 슈퍼레어, 선별된 프로젝트와 컬렉션을 구매할 수 있는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이 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의 경우 이더리움 같은 토큰 외에 신용카드 구매도 가능하며, 작품 하나에 복수의 넘버링을 달아 여러 차례 판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3) 부가형의 경우 민팅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24) 김보름·옹호성, 뮤지엄에서의 NFT 활용 현황과 전망, 박물관학보, 2022.6

25) 한국경제TV, "나도 모르는 새 복제품이?"...NFT 역대 복제품 사기 횡행, 2021. 9. 10.

나. 오프라인 미술관에서의 NFT 발행

세계에서 2번째 규모의 미술관인 러시아의 국립 에르미타시(Hermitage) 박물관은 ‘Hermitage NFT project’라는 제호 하에 2021년 9월 러시아 최초로 NFT를 활용한 디지털 미술전을 개최하였다²⁶⁾. NFT의 가장 유명한 걸작들의 NFT 디지털 아트 5건을 거의 45만 달러를 모금하는 형태로 판매하였다²⁷⁾. 이어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2021년 11월 박물관의 디지털 전시장 내에서 38개의 NFT를 전시하는 ‘The Ethereal Aether’라는 제목의 첫 번째 완전 디지털 전시회도 개최하였고, 에르미타시의 상설 NFT용 갤러리인 ‘Celestial Hermitage’도 마련하는 등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물관 현대 미술 부서 대표는 결국 모든 박물관들이 동일한 전철을 끊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 박물관(Francisco Carolinum Linz)에서는 2021년 6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Proof of Art’ 전시회가 열렸는데²⁸⁾ 이는 세계 최초의 NFT 전시회로서, NFT의 예술 업계에의 역사, 적용, 미래 예측과 그 영향에 관한 전시라는 문구로 홍보가 되었다. 또한, 해당 박물관은 이더리움 기반 크립토복셀로 온라인 박물관을 설립하여 대중들이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Glory Star New Media Group Holdings Limited’(이하 ‘글로리 스타’)는 2021년 4월 22일 베이징 민성 미술관(Minsheng Art Museum)과 NFT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NFT 기술의

26) COINTELEGRAPH, Russia’s Hermitage museum to host NFT art exhibition, 2021. 3. 26.

27) COINTELEGRAPH, Why the world’s largest museum is embracing NFT technology, 2021. 12. 10.

28) e-flux Announcements, Proof of Art, Francisco Carolinum Linz, 2021. 8. 11.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다²⁹⁾. 해당 계약에 의하면 글로리 스타는 디지털 예술작품의 민팅 및 저작권 보호를 비롯하여 베이징 민성 미술관과 협력사가 관리하는 컬렉션을 위한 NFT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계약 당사자 모두 공동 NFT 자산을 민팅하고 NFT 예술 작품 및 기타 수집가능한 디지털 작품들의 거래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다. NFT를 활용한 미술품 거래 사례

‘@tokenizedtweets’라는 트위터에서 자동화된 NFT 작성 봇이 있는데, 해당 봇이 트윗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특정 트윗의 NFT를 생성하여 문제가 되었다³⁰⁾. 즉, 트위터 사용자들이 자신의 트윗을 NFT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트윗 아래에 위 봇을 언급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으로 NFT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 예술가 Weird Undead가, 본인 작품을 홍보하는 이미지 등 그래픽이 포함된 자신의 트윗 아래쪽에 어떤 사용자가 “@tokenizedtweets”을 언급하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서 그림과 함께 개제된 자신의 트윗이 NFT로 그대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오픈시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통지하였는바, 오픈시는 이를 삭제하였다.

NFT는 블록체인 등 NFT 고유의 기술을 이용하여 개방성, 투명성, 탈중앙화 등을 표방하게 되는바, 예술 작품의 수집 및 거래 방법을 다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창작 방식까지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다³¹⁾. 예컨대 앞서 수집형 NFT에서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29) CISION PR Newswire, Glory Star Announces Signing of Cooperation Agreement With Beijing Minsheng Art Museum for NFT Applications, 2021. 4. 22.

30) ABC News, Artists report discovering their work is being stolen and sold as NFTs, 2021. 3. 16.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아트도 예술적인 측면 또는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능성과는 별도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디지털 작품의 NFT 발행(민팅)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유명 작가인 데미안 허스트는 'THE CURRENCY'라는 작품 1만 점을 대상으로 1년 내에 실물 작품이나 NFT 작품 중 하나를 최종 보유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NFT를 선택한 경우 실물 그림을 불로 태워 버리기도 하였다³²⁾. NFT를 실물 예술 작품과 연결하여 진본, 소장 이력 등을 기록한 일종의 증서(deed)로써 발행하기도 한다. 국내 실험 미술의 거장 이건용 작가는 작품의 구매자가 디지털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NFT '디지털 바디스케이프(Digital Bodyscape) 76-3'을 발행했다³³⁾. 이와 같이 예술계에서 NFT는 창의적으로 여러 변수를 통해 수집가 및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4. 엔터테인먼트와 NFT

가.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SKE48' NFT 트레이딩 카드 발행

일본 블록체인 회사 코인북(Coinbook)은 이더리움 ERC-721 토큰을 준수하는 트레이딩 카드 플랫폼 'NFT 트레이딩 카드'(NFT Trading Card)를 출시³⁴⁾하였다. 첫 번째로 나고야 사카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SKE48'의 대규모 라이브 스트리밍 이미지가 포함된 'Suddenly NFT Trading Card'를 2020년 10월 3일 출시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분야에서 NFT를 활용한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발급한 첫 사례였다. 코인북은 그 이후 2021년 6월 16일에

31) <https://www.marieclairekorea.com/culture/2022/10/bay-c-is-coming/>

32) 조선비즈, '원본 불태워 NFT 완성'...작품 수백점 불태운 데미안 허스트, 2022. 10. 13.

33) 스타데일리뉴스, '한국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가 첫 번째 NFT 프로젝트 '디지털 바디스케이프 76-3' 런칭, 2022. 6. 15.

34) Coin Post, 人氣アイドルグループ「SKE48」のデジタルトレカが即完賣 イーサリアムERC721を活用, 2020. 10. 5.

도 'SKE48'의 4월 콘서트에서 가져온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 고유한 데이터를 담은 한정판 '오다카케 NFT 트레이딩 카드'를 발매³⁵⁾하였다.

NFT 트레이딩 카드는 연예인의 이름, 공연명, 발행 매수, 구매자 등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재된 사용자 간에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 정보가 추가되며, 기록을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카드의 진위를 보장하게 된다.

NFT 트레이딩 카드는 기존 트레이딩 카드의 고유성을 데이터로 유지하면서 콘텐츠 가치를 제고하고 개인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항목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며, 게임아이템과 회원 및 소유권 증명 등 활용의 폭이 넓어서 아이돌 매니아 시장에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NFT 트레이딩 카드는 콘텐츠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 자체에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2022년 12월 경 미국 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본인의 이미지를 포함한 NFT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4,500개를 오픈시에서 판매하였는데, 해당 트레이딩 카드의 바탕이 되는 카우보이 복장 및 우주복 그래픽이 아마존과 월마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³⁶⁾는 의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나. 중국 아티스트 A Duo의 NFT 이용한 곡 발매 등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UCCA Labs는 2021년 3월에 최초의 암호화

35) Coin Post,
コインチェックNFT、アイドルグループ「SKE48」の限定デジタルトレカ販売へ、
2021. 6. 10.

36) STEPHEN M. LEPORE, Mail Online, Look familiar, Donald? Trump is accused of using copyrighted images in his NFT collection with 'fighter pilot outfit and cowboy costume from Amazon and Walmart photoshopped on to his trading cards', 2022. 12. 19.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여 NFT의 중국 주요 예술 현장에 진출을 했음을 알렸다³⁷⁾.

A Duo는 ‘Sisters Who Makes Waves’라는 쇼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중국 아티스트³⁸⁾이다. 그녀는 ‘Water Know’이라는 제목의 싱글 음원을 NFT로 발매하여 2021년 5월 25일 경매에서 47,000달러에 낙찰되었는데, 이로써 그녀는 NFT로 노래를 판매한 최초의 중국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 52퍼센트의 음악종사자가 어떠한 수입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NFT를 통한 음악 판매 방식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NFT 시장은 신인 아티스트에게 더 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주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고, 표현의 제약에서 벗어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아티스트 자신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제공한다.

다. 락밴드 킹스 오브 리온의 NFT 앨범 발매

캐나다 기반의 록 밴드인 킹스 오브리온(Kings of Leon)은 블록체인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인 엘로우 하트(YellowHeart)를 통해 ‘NFT Yourself’라는 앨범 시리즈를 발매하였고, 2021. 3. 발매한 앨범은 ‘When You See Yourself’이다³⁹⁾. 이는 한정판 음반(vinyl)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포함된 가변적인 이동식 앨범 커버를 포함하며, 구매 기간은 2주 동안으로 한정하였다. 킹스 오브 리온은 이러한 2주 동안 이를 통해 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37) Jing Culture & Crypto, Unearthing A Virtual Niche: Inside UCCA Lab’s NFT Exhibition, 2021. 4. 15.

38) Jing Daily, NFTs Are Shaking Up China’s Art Scene, 2021. 5. 29.

39) Rolling Stone, Kings of Leon Will Be the First Band to Release an Album as an NFT, Samantha Hissong, 2021. 3. 3.

앨범 중 첫 번째 유형은 스페셜 앨범 패키지이고, 두 번째는 ‘골든 티켓’이다. 이러한 골든 티켓은 18개만 판매되는데 평생 라이브 쇼 앞줄 4 열까지의 좌석에 앉을 수 있고 개인 운전기사,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밴드와의 만남, 독점 라운지 제공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6개의 한정 시청각 아트를 포함하는데 가격이 95 미국달러에서 2,500 미국달러까지 다양하다.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아마존, 애플 뮤직 등 모든 음악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일반 앨범과는 달리 이 새로운 NFT 앨범시리즈는 엘로우 하트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이러한 NFT를 2차 매매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된다.

엘로우 하트는 스마트 계약으로 다양한 티켓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한정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티켓에도 NFT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NFT는 약관 등에서 설정하기에 따라 재판매 될 때마다 특정 아티스트 등에 수수료가 귀속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자 등 권리자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플랫폼인 엘로우 하트는 NFT 재판매 최대 가격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암표상 근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음악계의 앨범 등 NFT 판매는 스트리밍 구도 기반 모델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음악계에서 음반의 가격을 회복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일본 NFT 마켓플레이스 ‘라쿠텐 NFT’

일본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Rakuten)은 2022년 2월 25일 NFT 마켓플레이스 및 판매 플랫폼 ‘라쿠텐 NFT’ 서비스 제공을 개시⁴⁰⁾하였다.

40)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라쿠텐, NFT 마켓플레이스 및 판매 플랫폼 ‘Rakuten NFT’ 서비스 제공 개시, 2022-10권호, 2022. 3. 8.

‘라쿠텐 NFT’는 음악,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같은 분야에서 NFT를 사용자가 구입하거나 개인 간 매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보유자가 NFT의 발행 및 판매 사이트 구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서비스 개시 시 최초로 애니메이션 ‘울트라맨’의 NFT 및 ‘GI 격투사 2010년 시리즈’의 NFT를 판매하기도 하였고, TV아사히의 TV 프로그램 명장면 등 영상 콘텐츠를 모아 발매한 NFT, TIGER & BUNNY2라는 애니메이션의 인기 캐릭터를 사용한 NFT, 일본 J리그 공인 NFT 컬렉션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 SIAE(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협회)와 블록체인 플랫폼 알고랜드를 통한 NFT 출시

SIAE(Italian Society of Authors and Publishers, 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 협회)는 1882년 밀라노에서 창립된 이탈리아의 신탁관리단체로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을 진행한다. 한편, 알고랜드 주식회사(Algorand Inc.)는 대형 블록체인 회사이며, 알고랜드(Algorand)는 알고랜드 주식회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름이기도 하다.

SIAE와 알고랜드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개방형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10만 명이 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400만 개 이상의 NFT로 디지털화하였다⁴¹⁾.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려면 모든 회원을 온체인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NFT에 발행하는 것이다. NFT는 구성원의 다양한 국가별 권리를 나누어 표상하고, 각 지식재산에 연결된 아티스트의 정보, 녹음, 작업물 등 관련 모든 메타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업로드하면, DSP(Digital Service

41) the Cryptonomist, SIAE: “Abbiamo scelto Algorand perche non consuma tanta energia”, 2021. 4. 18.

Provider,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와 ‘링크’가 생성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의 적용만으로도 스트리밍 사용료가 귀속될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DSP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각 음악저작물의 재생횟수를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기존 저작권 신탁 및 저작권료 징수 체계의 혁신 효과가 있다. SIAE의 목표는 전세계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영리기관이어서 이러한 탈중앙화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5. 게임과 NFT

가.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 NFT

NFT가 주목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된 ‘크립토키티’는 캐나다 회사인 대퍼랩스(Dapper Labs)가 2017년 출시한 게임으로서⁴²⁾,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 형태이다. 크립토키티 고양이는 이미지를 입힌 NFT이며,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져 각각의 고양이들은 희소성을 가지고 거래된다. 각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NFT로 표시되며, 스마트계약을 통해 거래된다.

제작사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 고양이 크립토키티를 구매, 판매, 번식시켜 육성하는 것을 게임의 내용으로 하며, 각 고양이들은 털의 색깔, 눈의 모양, 입의 생김새 등이 각각 다르다. 구체적인 게임방식은 NFT 거래에 게임 요소를 더한 것인데, 사용자가 메타마스크(Metamask)와 같은 이더리움 크립토 지갑을 생성하고, 크립토키티 NFT 하나를 구매한다. 구매한 NFT로 2개의 크립토키티를 교배하거나 양육해서 또 다른 고유한 크립토키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교배종은 부모 고양이가 가졌던 것과 번호 1이 더 높게 붙여지며, 이러한 세대와 다른 요소

42) Bloomberg, NBA Stars Lining Up to Become Backers of New Blockchain Project, 2020. 8. 6.

에 따라 다른 ‘쿨다운 타임’에 따라 양육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희귀한 크립토키티가 생성되면 입찰하여 사용자들 사이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 크립토키티가 양육 또는 판매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17년 출시 해에 크립토키티 매출이 67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 독점 크립토키티 “Celestial Cyber Dimension”이 경매에서 14만 달러에 판매되었고, “Dragon”이라는 크립토키티가 17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하였다.⁴³⁾ 크립토키티는 2018년에는 320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이더리움 트래픽의 25%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크게 유행하였는바, 이 게임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NFT 거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18년 이더리움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1년만에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NFT게임은 본인의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이템에 대한 소유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게임제작사 입장에서는 아이템 거래를 통한 재판매 수수료 등을 취득하고 게임 내 아이템 복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일본 게임 퍼블리셔 SEGA의 게임 지식재산의 NFT 판매

일본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개발 및 퍼블리셔인 SEGA는 2021년 여름에 ‘대표 지식재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44).}

SEGA는 일본 국내 게임회사인 더블 점프 도쿄(Double Jump Tokyo)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디지털 콘텐츠

43) VentureBeat, CryptoKitties explained: Why players have bred over a million blockchain felines, 2018. 10. 6.

44) NFT News Today, SEGA Announces it Will Sell NFTs in Summer 2021, 2021. 4. 27.

판매를 시작하였다⁴⁵⁾. 이는 SEGA가 과거에 출시한 게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기가 있는 클래식(대표) 게임의 지식재산을 NFT로 발매한다는 것으로 그 구성으로 출시 당시의 비주얼 아트, 게임의 원작 이미지, 게임 플레이 영상, 그리고 배경음악(BGM) 등의 지식재산 등이 있다. SEGA는 이를 시작으로 현재 개발 중인 게임 IP는 물론 향후 출시될 신규 IP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NFT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이용자가 보유한 NFT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SEGA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오다가 최근 2022년 9월 NFT를 기본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것임을 밝혔다⁴⁶⁾. 해당 게임은 클래식 게임 IP 중 물리적, 디지털 카드 수집을 내용으로 하는 아케이드 게임인 ‘삼국지대전’에 기반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NFT는 게임업계에서도 기존에 게임 내 외에 별도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웠던 게임을 구성하는 IP에 대해서도 가치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하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게임 회사 자체에서 그대로 보유하게 하면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드는 효과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Play to Earn과 게임 NFT

게임에서 NFT는 사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토큰 형태로 구매하여 본인의 디지털 지갑에 담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게임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서, 당연히 게임 안에서 게임 회사에서 책정한 가격과 정책에 따라 아이템

45) 김형지, NFT 저작권 관련 산업의 해외 사례와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Vol.35,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46) GAMERANT, Sega's New Blockchain Game is Doomed to Repeat History, Anna C, 2022. 9. 30.

구매 등이 이루어졌다.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Play-to-Earn (P2E)’ 게임이라고 하는데, NFT가 게임에 도입되면서 NFT 기타 토큰화된 자산을 사용하여 게임 내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의의 P2E 게임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중개업체를 이용하여야 했으나,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수수료를 절약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는 P2E 게임을 하면서 NFT 아이템을 얻고 전자지갑에 전송하며, 전자지갑에 있는 NFT를 다시 게임 내 아이템의 형태로 ‘전송’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NFT는 전자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게임 서비스·계정과 무관하게 NFT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중여는 물론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대가 지불하는 매매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FT 기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취소 또는 거부하여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이 사행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의 공통 요소는 우연성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인 유상성인바, 관련 행정 소송 등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연성이나 유상성을 주장하면, 게임업체는 그러한 기능은 일부 콘텐츠일 뿐, 다른 게임에도 존재하며, 기존의 게임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얼마 전 2023년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이템을 블록체인 기술인 NFT 기술에 따라 NFT화 할 수 있는 게임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소를 연이어 기각한 바 있다⁴⁷⁾.

참고로 최근 동명의 만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⁴⁸⁾, 원작자가 계약 범위 내의 사업인 모바일 게임사업은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P2E게임 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게임 운영자 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게임 운영자측에서는 게임 개발방식이나 수익창출방식은 계약에서 규정한 바 없으며 관련 토큰은 해당 게임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독립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저작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대응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고 현재 항고심에 계류 중이다.

NFT가 최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도입되면서 원천 IP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P2E 게임 등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기존 라이선스 계약 범위 내에 NFT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원천 IP 보유자와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NFT 및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6. 출판업계에서의 NFT 발행 사례

블록체인을 다루는 일본 Gaudiy사는, NFT를 이용하여 전자책 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매커니즘을 개발⁴⁹⁾하였다.

47) 디지털타임스, 국내선 꽉 막힌 P2E 게임… ‘무돌삼국지’도 유통 금지, 2023. 1. 31.

48) 시사저널, ‘모르는 새 내 작품이 NFT로’… 게임까지 번진 저작권 분쟁, 2022. 10. 28.

49) Coindesk Japan, 電子書籍を古本として賣れる？NFTをブロックチェーンで管理、二次流通市場の創出へ——Gaudiyなどが實証實驗；, 2020. 7. 15.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은 다수가 해당 도서의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읽을 권리’만을 구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데이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등을 하기 위하여 피치 못하게 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자책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통해 열람, 복사를 제한하고 있다. DRM은 각 전자책 제공 사업자마다 자체 사양을 사용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제공 사업자가 지정한 장치나 뷰어에서만 전자책을 읽을 수 있으며, 서비스를 종료하면 가치를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일본 Gaudiy사는 NFT를 활용하여 ‘데이터 소유 전자책’(data-owned electronic books)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NFT 기술을 통해 데이터 불법 복제를 방지하면서 전자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종이책처럼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일반 전자책과 다른 점이다. 판매시 재판매 수수료를 출판사나 저작권자 등에 귀속시킬 수도 있어 중고 판매에서 비롯되는 이익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책의 NFT화를 통해 ‘특정 전자책에 저자 사인’, ‘초판 도서 한정 판매’, ‘판매 후 주요 부분 추가 또는 변경’ 등 유일무이한 가치를 더하는 변형도 가능하여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버전의 전자책 NFT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작권자와 전자책 보유자 모두의 권리와 가치를 더욱 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 디파이형 NFT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서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⁵⁰⁾을 일컫는다. 주로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을 담보로 걸고 일정 액수를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NFT를 자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파이 시

50) KOFAC FOCUS,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NFT 활용방안(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

장은 NFT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함께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NFT파이(nftfi)’는 P2P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에 NFT보유자가 특정 NFT를 등록하게 되면 랩이더리움 또는 dai 등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담보대출 관련 NFT 플랫폼이다. 자산 차용, 대여에 대한 정보는 목록화할 수 있어 원하는 거래의 선택이 자유롭다. 개인 간의 사적 합의에 따라 금융 기관의 개입 없이도 대출 관련 내용이 담긴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있는 대출 시스템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총 7720.08wETH가 NFT파이 플랫폼을 통해 대출되었다고 한다.

제 3 장 NFT 발행·유통과 저작권의 관계

제 1 절 발행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스마트 계약의 체결

가. 스마트 계약의 개념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1994년 경 닉 자보라는 미국인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제작하여 컴퓨터가 인간 대신에 조건을 해석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개념을 창안⁵¹⁾하여 개발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부터 그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이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사전에 작성된 알고리즘 코드 자체를 의미하는 것⁵²⁾으로서, NFT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스마트 계약의 의미도 일원적인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마트 계약이 ‘계약’이라 일컬어지지만 ‘코드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⁵³⁾’ 등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다수로 보이며,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당연히 있다⁵⁴⁾. 어느 견해를 취하던지 스마트 계약 자체로서는 민법상 전형적인 의미의 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위 등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NFT 거래 당사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코드로 설정되어 있는 거래 관계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계약상 의무를

51) Nick Szabo, Smart contracts in Essays on Smart Contracts, Commercial Controls and Security, 1994

52) 신봉근,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99면

53)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 제727권 2018. 2, 164면

54) 김제완, 위 논문, 175면

이행하게 되는데, 전자적인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까지도 인간의 관여 없이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⁵⁵⁾ 최초에 NFT 민팅 시 발행자는 스마트 계약을 위한 조건을 입력하게 되는데 저작권료 지급 등 조건, 발행량, NFT 보유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각종 관련 정보가 기록된 메타데이터 주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이후 거래에서 구매자가 NFT를 구매하고자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겠다고 최초의 입력을 하고 대금을 이행하면 NFT 구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알고리즘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저장 및 실행된다. 여기서 이행이라 함은 NFT가 이전되고 NFT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저작권자나 발행처에 자동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 영국의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지위에 관한 법적 성명 발표와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영국 관할권 태스크 포스(UK Jurisdiction Taskforce)는 2019년 11월 18일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상태에 관한 법적 성명’(Legal Statement on the Status of Cryptoassets and Smart Contracts)을 공표하였다⁵⁶⁾. 당시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표였고, 위 주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계 금융 산업에서 필요한 시장 신뢰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위 성명의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암호화 자산은 재산이 갖는 일반적인 법적 요소들을 모두 가지며, 영국법제상 재산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⁵⁷⁾. 이는 도산절차에서 환취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되며 절도 등의 객체가 되고 신탁의 대상이 된다. 반면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55) 김제완, 위 논문, 163면

56)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1/LegalStatementLaunch.GV_2-1.pdf

57) 물론 한국법상 ‘재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않고, 무형 자산도 아니며, 유통 증권도 아니라고 한다. 한편,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코드로 기록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영국 법상 계약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도 영국의 법률 원칙에 따라 판별, 해석 및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서 서명이라는 요건 역시 개인별 키를 사용하거나 소스 코드로 이미 규정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위 성명은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에 기존의 영국법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영국 정부의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위 주제, 즉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관련하여 영국의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검토를 받아 공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⁵⁸⁾인데, 2021년 11월 25일에는 스마트 계약의 경우 영국의 보통법에 따라서 특별한 법적 개선이 없이도 계약으로서 수용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⁵⁹⁾한 바 있다. 법률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스마트 계약에 명시적 조건을 포함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시장이 스마트 법률 계약의 법적 처리에 대한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수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명시적 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코드의 성능과 관련하여 위험을 할당하고 자연어와 코딩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조항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최근 더욱 전세계의 관심을 끄는 디지털 자산 및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선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어 관련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적인 측면으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법적으로 어떤 성격과 근거에 따라 적용시킬

58) Law Commission,

<https://www.lawcom.gov.uk/adapting-english-law-for-the-digital-revolution/>

59)

<https://www.lawcom.gov.uk/the-law-of-england-and-wales-can-accommodate-smart-legal-contracts-concludes-law-commission/>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NFT의 발행 절차

특정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하여 NFT화를 생성하는 절차를 민팅(Minting)이라 한다⁶⁰⁾. NFT의 민팅은 직접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을 하여 생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주로는 마켓플레이스나 각종 플랫폼에서 지원되며, 플랫폼에 따라 디지털 자산 업로드를 민팅 시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민팅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의 오프체인 방식의 민팅 시에는 스마트 계약에 입력하도록 NFT화할 특정한 디지털 자산의 명칭, 특징, 저작자 정보, 속성, 설명, URI 등을 기록한 특정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⁶¹⁾. 디지털 자산은 토큰에 기재된 이른바 메타데이터를 통해 NFT와 연결되어 NFT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블록체인 외부 서버인 오프체인의 자산은 메타데이터와 매핑(mapping) 통해 연결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NFT 아키텍쳐 내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 이른바 온체인 자산도 NFT 발행이 가능하나, 블록체인에 대용량 데이터를 올리면 블록체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수수료 비용도 높기 때문에 NFT 토큰만 블록체인 온체인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과 메타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하게 되는데 중앙화된 방법을택할 경우 위, 변조 등 위험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탈중앙화 분산형 파일시스템인 IPFS로 저장하는 방식⁶²⁾도 선호되고 있다.

요컨대 일반적인 NFT 발행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면, (i) 먼저 NFT

60) 현소진, 위 논문, 445면

61) 현소진, 위 논문, 446면

6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 문헌, 6면

제작을 위한 대상 파일로서 100MB 이하의 적격 용량의 디지털 파일을 준비하되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ii) 오픈씨 등 NFT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며, (iii) 본격적인 민팅 과정으로서 업로드 후 ‘블록체인’화를 하되, 기반이 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제작형식(개수 등), 판매 방식(경매, 지정가 등), 수수료 지급 등을 통해 민팅을 한다. 그 후 마지막으로 (iv) 마켓플레이스에 작품을 등록하고, 재판매 수수료를 설정하며, 등록 후 설정된 방식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게 된다.

3. NFT 발행시 발행자의 권리

특정한 저작물 내지 자산을 NFT화 할 때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자가 소유권, 저작권 또는 그 이용권한 등 NFT를 발행하고 판매, 구매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프린트물은 물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저작물을 마케팅 할 권리를 부여 할 수도 있다.

NFT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바, NFT를 구매한 자는 ‘구매자’ 내지 ‘보유자’로서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NFT를 배타적으로 사용 내지 보유할 권한을 갖는다 할 것이다. 한편, NFT는 재판매 수수료가 있는 등 대부분 재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들의 거래 약관에서도 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본고 제3장 제2절 3.참고).

NFT의 대상 저작물 관련해서는 구매자의 사용 가부 및 범위가 이용약관이나 라이선스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NFT 콘텐츠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NFT 판매 목적 외로 상품 제작 및 라이선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NFT 재판매시 저작권 관련 권리소진의 원칙(저작권법 제20조 후단)

이 적용되는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권리소진의 원칙의 대상인 행위태양인 ‘배포’는 유형물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⁶³⁾이나, 실무상 NFT 거래시 권리소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래되고 가치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NFT 구매자들도 해당 저작물이 원본인지, 발행자가 NFT 발행을 위한 저작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약관 등의 권리 귀속 내지 면책 규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자인 저작권자 본인은 저작재산권 및 인격권을 보유하므로 민팅 과정에서 복제, 전송 등 저작권 이용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작품의 단순 보유자 등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진행할 경우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의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민팅 방식인 오프체인 방식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이 블록체인 외부에 있고 이의 링크 주소를 메타데이터로 기재한 후 민팅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 특정한 저작권 침해 태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을 민팅 과정에서 새로운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 확보가 필요하겠다.

나아가 저작재산권이 문제되지 않는 국면에서도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NFT를 발행하는 경우 등에 이를 발행하거나 또는 변형하거나 저작자 표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양도 및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63) 대법원 2007. 12. 4. 선고 2005도872 판결

예컨대 한 업체는 2021년 5월 유명 화가인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 작품에 대한 NFT 경매를 대중에 공표하였으나, 저작권 침해 이슈로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작품 소유자와 경매 협의를 하였으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 중 화가 이중섭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상태라고 하나 저작인격권의 경우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들이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4. 무권리자의 민팅

가. 미국 법원 사례

(1) 미라맥스 대 쿠엔틴 타란티노 사건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et al (California Central District Court, November 16, 2021)]

동 사건에서 원고인 미라맥스(Miramax, LLC)는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의 필름 프로덕션 회사이고,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는 그 영화감독이었다. 그런데 타란티노 감독은 2021년 영화 펄프 픽션의 미공개 장면, 대본 등을 NFT화하였고 거래소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하였다.

미라맥스와 쿠엔틴 타란티노 등의 영화 펄프픽션 제작 및 투자 계약에는 ‘펄프픽션에 대한 제반 권리’(all rights(including all copyrights and trademarks) in and to the Film(and all elements thereof in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now or hereafter know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 to distribute the Film in all media now or hereafter known(theatrical, non-theatrical, all forms of television, home video, etc.)를 전세계적으로 미라맥스 측에 영구적으로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타란티노 감독에게는 ‘사운드트랙 앨범, 음악 출판, 생실연, 출판물 인쇄(오디오 및 전자 포맷 형태의 시나리오 출판, 도서 제작, 만화책, 소설 출간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연극 및 TV 속편으로 리메이크할 권리, TV 시리즈로 각색 또는 파생된 작품을 제작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미라맥스는 타란티노 감독에게 유보된 NFT와 무관한 일부 권리 외에는 모든 권리를 미라맥스가 가지므로, 타란티노 감독의 NFT 발행, 판매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라맥스와 타란티노 감독이 합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2) 로카펠라 레코드 대 데이먼 대시 사건[Roc-A-Fella Records Inc. v. Damon Dash (New York Southern District Court, June 18, 2021)]

피고 데이먼 대시(Damon Dash)는 원고 로카펠라 레코드(Roc-A-Fella Records Inc.)에 대하여 지분 1/3을 보유하는 공동 창립자이다. 데이먼 대시는 로카펠라 레코드 소속 가수였던 유명 가수 제이지(Jay-Z)의 데뷔 앨범인 ‘Reasonable Doubt’에 대한 저작권을 NFT로 전환하여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판매하려 하였다⁶⁴⁾.

로카펠라 레코드는 이에 대해, 로카펠라 레코드가 해당 앨범에 대하여 저작권 포함 모든 권리를 가지며, 데이먼 대시는 해당 앨범에 대해 저작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앨범의 저작권 지분을 NFT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데이먼 대시가 NFT 제작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64) Complaint, Case No. 1:21-cv-5411

이와 같이 콘텐츠에 대한 NFT에 대하여 주로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NFT 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탕이 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이용권리에 관한 것으로 그 NFT화 및 거래·유통에 대해서도 권리가 미치는지 등 주로 계약상, 사실상 권리 확보가 논점이 되고 있다.

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NFT 발행시 법적 문제

(1)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⁶⁵⁾

타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NFT 발행시 관련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여서는 된다. 다만 이 때 대상이 되는 것은 NFT 자체가 아닌 대상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관계이므로 일반 저작권법 조항 또는 법리에 따라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논의는 주로 원저작물인 대상 저작물 자체가 디지털로 제작된 이미지, 동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이거나, 원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개작을 가하였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저작물의 복제⁶⁶⁾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 논의이며, 대상 저작물을 NFT화하기 위해 수정, 개작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가 필요할 것임을 명시한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를 기대하고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NFT를 무작정 발행하기보다는 되도록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제한 규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경

65) Bianca Lessard, NFTs, Minting and Copyright: what you should know as an artist, Reno &

Co.(<https://www.rennoco.com/post/nfts-minting-and-copyright-what-you-should-know-as-an-artist>)

6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우가 많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여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⁶⁷⁾.

저작권법 제35조의5도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른바 저작물의 공정이용),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역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제3자의 특정 저작물을 NFT화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작가 등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NFT에 사용되는 타인의 저작물 부분이 부수적인 일부에 불과하고 NFT 대상 저작물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우연히 포함된 것이며 NFT의 발행으로 인하여 대상 저작물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관련 수요를 대

6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체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FT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전제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으로 많이 규정되고 있고 대상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비추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3)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NFT 대상인 타인의 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면 자유 이용 저작물, 이른바 공유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될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1조).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해손하는 정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조).

이러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내지 공유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인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때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⁶⁸⁾, 사망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명예훼손이 될 정도로 침해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러한 NFT 발행은 어려울 것이다.

판례는 소위 ‘이광수’ 사건에서 망인 이광수 소설 중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른 오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 경우⁶⁹⁾나 ‘소설 이휘소’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망인이 작성한 편지 내용을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여 게재한 경우⁷⁰⁾에 망인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저작물의 문장을 상당 부분 수정, 변형한 경우라거나,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다소의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가 주장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예컨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무단으로 민팅하려는 등 예술가 작품을 제3자가 NFT화하는 경우 분쟁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 실물의 NFT화 등 정부의 공공 목적의 NFT 제작 판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만료 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때 가격이 높게 형성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채권적 효력만이 존재할 뿐이며, 해당 만료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물권적 또는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저작물을 변형 없이 NFT화한다면 대상 저작물로 사용하는데 윤리적인 관점 외에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⁷¹⁾.

(4) 그 밖의 공유저작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권리를 기증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저작물은 공유 저작물로 볼 수

68) 현소진, 위 논문, 454면

6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

70)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71) 현소진, 위 논문, 455면

있다. 공유저작물이 되면 권리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판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NFT를 발행할 때 원본이어야 하는 등 해당 저작권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저작물들이 NFT발행까지 가능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아직은 많을 것이다.

제 2 절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1. NFT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문제

NFT를 구성하는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력 소비와 용량, 거래 비용 등의 문제로 NFT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업로드되기 보다는 대상 저작물은 발행자의 서버 혹은 분산저장시스템에 저장하고, NFT는 해시값과 링크 등 대상 저작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등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기록될 뿐이다.

NFT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된 NFT를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NFT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인하여 대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⁷²⁾. 그러나 NFT 보유자가 소유하는 것은 토큰일 뿐이고 NFT의 양도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개별 NFT마다 이전 권리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재판매 로열티를 포함한 소유권, 저작권 등 라이선스 조건은 발행자가 관련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메타데이터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 거래시 확인이 필요하겠だ⁷³⁾. 또한 일부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특정 작가와 사전계약을 하는 등

72) 오혜민, 위 기고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 제18호

73) 연구책임자 김찬동,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으로 약관에도 NFT 구매자가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테, 이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설명의무 등 유효성 및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NFT의 대상 저작물은 채권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⁷⁴⁾.

따라서 NFT 구매자들은 대금 지급 및 스마트 계약 체결로 NFT를 이전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NFT 대상 저작물을 활용할 시 라이선스 상의 이용조건을 따라야 한다. 즉, 디지털 저작물 관련 NFT 구매자는 지식재산권자 및 NFT 발행인이 지정한 조건에 따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희소성 있는 일부 권한에 국한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시가총액 9위 NFT 프로젝트인 Azuki(아즈키)의 경우 NFT 구매자에게 무제한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상업적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NFT 프로젝트와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스마트 계약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에 의하면 NFT 구매자에게 해당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양도 또는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투자기업인 Galaxy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가총액 상위 25개 NFT 프로젝트 중 단 하나의 NFT 프로젝트만 NFT 구매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프로젝트는 라이선스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⁷⁵⁾.

2. NFT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

2022. 11., 104면

74) 김현경,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75) 오혜민, 위 기고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 제18호

가. NFT 발행자의 권리

NFT 자체에는 대상 저작물이 표시되지 않고, 보통 민팅 과정에서 대상 저작물이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지만, NFT 발행자는 대상 저작물을 디지털 저작물로서 보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오프라인 저작물을 민팅하는 경우, 소유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복제권 또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작성할 권리인 2차적 저작물작성권 또는 적어도 각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아가 NFT 거래 중에 필요할 수 있는 전송, 배포 등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에 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오프라인 저작물을 민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법원 사례는 이제 형성 중이므로 초기의 각국 법원 판시가 관련 업계의 NFT 관련 기존 계약 해석 및 향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미라맥스 대 쿠엔틴 타란티노 사건에서는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 펄프픽션의 수기 시나리오 페이지 원본의 스캔본을 NFT 대상 저작물로 삼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미라맥스의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당사자 누구도 영화 펄프 픽션과 관련된 NFT 발행 및 판매 시 누구에게 관련 권리가 귀속될 것인지 고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 의사 및 계약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타란티노는 미라맥스에게 ‘특별히 유보된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영

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러한 유보된 권리에는 ‘시나리오 출판’(screenplay publication)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중요 논점으로 다루어졌는데, 미라맥스는 ‘원본 스크립트 페이지 몇장을 NFT로 판매하려고 한 것은, NFT 자체가 1회적 거래이므로 ‘출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타란티노는, 미라맥스가 NFT 개념에 대해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법원을 오도한다고 하면서, 타란티노가 유보하고 있는 고유의 권리를 부인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라맥스는 해당 계약에서 미라맥스가 ‘현재 또는 미래에 알려질 모든 미디어’에 대해 ’펄프 픽션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발췌문과 관련된 NFT를 판매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⁶⁾.

위와 같은 논쟁과 관련하여, 국내 저작권법 관점에서 살펴보면,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권리’로 이해되고(저작권법 제63조), 복제·배포권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배포’라 함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유형물⁷⁷⁾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NFT발행은 ‘출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공중’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공중에게 공개된 NFT의 경우 NFT가 1개이든 수 개이든지 간에 ‘출판’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17 U.S.C. §101에 의하면, ‘출판’은 저작물 또는 음반의 복사본이나 녹음을 판매 또는 다른 방식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규정⁷⁸⁾하는바, 위 국내 저작권법 관점에

76) Jessica Rizzo, The Future of NFTs Lies With the Courts, 2022. 4. 3. Wired.com

77) 특정 MP3 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한 채로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배포’가 아니라고 한 앞의 대법원 2007. 12. 4. 선고 2005도872 판결

서와 마찬가지로 1회적 거래라고 하여 반드시 미국 저작권법상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같이 계약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둔 권리자 측의 해석을 지지하였는바, 향후 특정 콘텐츠 관련 라이선스 혹은 저작권 등 권리 양도 계약 체결시에도 NFT와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NFT 보유자의 권리

(1) NFT 자체에 대한 법적 권리

NFT는 대상 저작물과는 별도의 것으로 일종의 권리증명서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NFT는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NFT 발행시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NFT가 독자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작물의 원본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NFT라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의 법적 보호를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데이터의 물권 법적 보호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NFT는 디지털 정보의 데이터 파일이지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야 하는 ‘점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⁷⁹⁾. 한편, 일각에서는 민법 제98조

78) "Publication" is the distribution of copies or phonorecords of a work to the public by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r by rental, lease, or lending. The offering to distribute copies or phonorecords to a group of persons for purposes of further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or public display, constitutes publication.

79) 정진명, 위 논문, 68면

는 물건을 정의하는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제99조에 의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인데, NFT를 데이터로 볼 때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NFT는 적어도 소유권에 상당한 권리를 인정하며 민법상 소유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⁸⁰⁾.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민법 개정안에서도 ‘물건’의 정의에 데이터가 포함된 바 있었고, 2022. 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에 의하면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보호와 위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 사용, 공개, 탑재 제공 행위를 제한하는 등으로 법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데이터기본법에서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바, NFT 자체를 위와 같은 ‘전자적 방식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하기는 문언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NFT 보유자들이 NFT 자체에 대해서 법상 소유권을 가진다는 단정을 하기는 어려운 한편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⁸¹⁾,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시하였다⁸²⁾.

80) 윤종수·표시영 위 논문, 228면;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90호, 132면, 2020. 3.

8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또한 최근에는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⁸³⁾. 이와 같이 대법원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률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NFT는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의 입장 역시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⁸⁴⁾’는 것으로, NFT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가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향후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입장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어 보이므로, 추후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2) NFT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NFT는 그 기반이 되는 대상인 자산의 가치만을 표상하는바 NFT의 대상 저작물은 NFT와는 별개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다⁸⁵⁾.

다만 NFT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자가 NFT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8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8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84) 금융위원회 2021. 11. 23.자 보도설명자료

85) 정진명, 위 논문, 72면

갖는 권리의 범위는 NFT 발행시 발행인이 스마트 계약이나 이용약관 등에서 설정해 둔 권리 범위에 한정된다. 이는 유형물에 대한 NFT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NFT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NFT를 민팅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 내지 온전히 라이선스 하지 않고 NFT 활용에 필요한 범위 정도의 라이선스만 NFT 보유자가 보유하도록 계약을 작성해 두는 경우 NFT 보유자가 해당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대상 저작물을 이용시에는 NFT 보유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한편, 계약상 허락된 것 외에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미술저작물등')을 NFT화 할 시 원본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를 규정한 저작권법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본의 소유권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아트, 사진 등 저작물인 특정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NFT를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제한을 받게 된다⁸⁶⁾. 예컨대, 수집형 NFT와 같이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NFT의 경우 개인적인 프로필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라이선스 범위에서 벗어나 특정 NFT 이미지 혹은 사진을 SNS에서 활용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전시할 경우에는 NFT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를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미술저작물등의 원본 소유자 혹은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전시'권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별도 정의는 없고, 다만 대법원에서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전시'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86) 윤종수·표시영 위 논문, 233면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⁸⁷⁾고 판시하였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전송’에 대해서는,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전시는 전시가 아닌 전송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나, 디지털 데이터로 된 NFT를 물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보여주는 메타버스 내의 사회에서나 온라인에서의 특정 활동이 전시로 해석될 여지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위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상 저작물(특히 디지털이 원본인 사진 또는 미술저작물)의 원본 소유자가 NFT 보유자라고 보는 경우 이를 전시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것이나, NFT 보유자가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지에 관하여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⁸⁸⁾이므로 법원의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위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될 경우 NFT 보유자는 라이선스 범위와 무관하게 이를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이 원본인 NFT에서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이 NFT 보유자에게 된다고 볼 수 있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와 관계 없이 NFT보유자는 NFT 대상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 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은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NFT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8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88)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13면

있겠다. 그러나 법원은 호텔의 로비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관련 사안에서,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⁸⁹⁾, ‘골프존’ 사건에서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⁹⁰⁾고 하였는바, NFT가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회원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Crypto BAYC 사례의 분석

(1) 개관

NFT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교적 넓은 범위의 권리가 주어지는 BAYC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크립토팡크는 최초의 수집형 NFT이자 최초의 PFP(Picture for Profile) NFT라는 상품성을 통해 NFT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수성하였다. 그 이후 발행된 BAYC는 대표적인 수집형 NFT로 1위 자리를 탈환하고 대체 불가능한 NFT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였다⁹¹⁾.

미국의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인 유가랩스(Yuga Labs)가 2021년 4월 30일에 시작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인 BAYC는, NFT 대상 저작물이 눈, 생김새, 모자, 털, 입, 배경색, 의상 등 일곱가지 속성 내에 다른 특성을 조합하여 만들어낸 1만 개의 제너레이티브 아트인 원숭이 아바타로 구성된다. BAYC는 최초 발행시 이더리움 가 0.08이더리움, 환산 200달러에서 시작하였으나, 2021년 8월에 이미 최저가 15이더리움(한화 약 5,200만 원)까지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2022년 4월에는 최저가 150이더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7. 선고 2006가합104292판결

90) 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5나2016239판결.

91) 유가랩스는 라바랩스로부터 크립토팡크를 매수했다.

리움(한화 약 5억 4천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⁹²⁾. BAYC는 대상 저작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일종의 디지털 프로필 이미지로 NFT 보유자의 분신으로 활용되며, 희소성과 고유성이 인정된다.

BAYC의 특징으로는 (i) NFT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회원용 커뮤니티의 존재, (ii) 상업적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부여, (iii) 판매 전 로드맵 제시 등 요건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희소성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의 사업과 회원 간 친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BAYC의 가치 상승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저작권, 상표권 등을 소유자에게 상업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기존 중앙집권적인 지식재산 형성이 아닌 커뮤니티와 소유자 주도의 사업 모델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2) BAYC NFT 보유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의 분석

BAYC의 거래 약관⁹³⁾은 상당히 깊고 간명하다. 서문 및 ‘소유권’, ‘개인적 사용’, ‘상업적 사용’의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⁹⁴⁾.

다만, 본 거래 약관에서는 아래서 살펴볼 바와 같이 유가랩스가 BAYC의 대상 아트(the ‘Art’)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개인적 사용 및 상업적 사용(2차적 저작물작성권

92) 아모 젠스케·마사다 마사후미 외, 위 단행본, 98면 이하

93) <https://boredapeyachtclub.com/#/terms>

9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877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등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i항의 소유 관련 조항의 경우 NFT 구매자는 전제되는 대상 아트인 Bored Ape를 온전히 소유한다고 규정한다. NFT를 구매하면 적어도 대상 아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BAYC 거래약관에서는 그와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NFT에 연결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현행 민법상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한편, 일각에서는 BAYC에서는 저작권이 양도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BAYC 거래약관을 살펴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명백해 보인다.

두 번째, ii항은 NFT를 구매하면서 위 i항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게 된 대상 아트에 대해, 이를 사용, 복제 및 전시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무상의 라이선스와 창작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확장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다음 세가지 범위로 국한되는데 먼저 ①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의 사용, ② 실제 소유자만이 대상 아트를 전시할 수 있도록 각 Bored Ape 소유자가 대상 아트를 자신들의 Bored Ape를 위해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암호화하여 검증하는 마켓플레이스임을 전제로, Bored Ape/NFT의 구매 및 판매를 허용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사용, ③ 실제 소유자만이 대상 아트를 전시할 수 있도록 각 Bored Ape 소유자가 대상 아트를 자신들의 Bored Ape를 위해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암호화하여 검증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임을 전제로, Bored Ape의 포함, 개입 또는 참여를 허용하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 등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은 Bored Ape 소유자가 해당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떠날 경우 대상 아트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요컨대, 동 조항은 검증된 NFT/Bored Ape의 사용을 허용하는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의 사용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

의 사용의 범위에서 무상사용을 범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한도 내에서 저작재산권 등 이용 역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iii항의 상업적 사용이라는 제하에 대상 아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창작 목적 사용, 복제 및 전시권을 무제한, 전세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i.항의 대상 아트에 대한 소유권 부여 조항과 결합하여 NFT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보유자에게 대상 아트를 활용할 권리가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AYC 거래 약관은 위 상업적 사용의 예시로 “대상 아트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상품(티셔츠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대상 아트를 사용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 ① 실제 소유자만이 대상 아트를 전시할 수 있도록 각 Bored Ape 소유자가 대상 아트를 자신들의 Bored Ape를 위해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암호화하여 검증하는 마켓플레이스임을 전제로, 대상 아트인 Bored Apes의 사용 및 판매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소유 또는 운영도 가능하며, ② 역시 위와 같은 암호화 검증을 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임을 전제로, Bored Ape를 포함하거나, 관여 또는 참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소유 또는 운영 등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Bored Ape의 소유자가 해당 웹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떠나면 대상 아트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상업적 사용시 수익을 얻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NFT 보유자들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

(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권한 부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를 구매한다는 것으로 관련 데이터나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양도 내지 라이선스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BAYC는 그 전의 다른 NFT 프로젝트들이 일반적으로 NFT 자체에 대한 재판매권한 및 거래 가능한 권리만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대상 아트를 온,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개인적·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NFT 보유자에게 부여하였다.

BAYC의 경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NFT 보유자에게 무제한으로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상업적 이용 측면에선 저작권을 보유한 것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사용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않음으로써 BAYC NFT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한 편으로는 NFT 판매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적어도 보유기간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

BAYC NFT는 PFP라는 점 뿐만 아니라 보유자들로 하여금 상업적, 개인적 용도를 불문하고 대상 아트를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촉진시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나) 커뮤니티 운영과 저작권 문제

BAYC가 흥행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커뮤니티를 가장 큰 이유로 본다. NFT 구매를 BAYC 사교클럽의 가입조건으로 제시하고, 가입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혜택도 계속 제공한다.

① BAYC 연계 프로젝트

BAYC의 연계 프로젝트로 ‘지루한 원숭이 켄넬 클럽’(BAKC, Bored Ape Kennel Club), ‘돌연변이 원숭이 요트 클럽’(MAYC, Mutant Ape

Yacht Club)을 만들고 진행했다⁹⁵⁾.

BAKC는 2021년 6월 진행된 프로젝트로 비밀 클럽에서 혼자 생존한 각 원숭이들에게 원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강아지를 분양하는 개념인데, 사전 신청 하에 클럽 멤버들에게 강아지 NFT를 무작위로 무상 지급하였다. 총 1만 마리 중 9,674 마리 BAKC NFT가 Bored Apes를 만났다.

MAYC는 2021년 8월 진행된 프로젝트로 사교클럽 지하에 사는 컨셉의 원숭이 NFT를 발행하면서, 절반은 경매로 판매하고 절반을 멤버들에게 지급한 파생 프로젝트이다⁹⁶⁾. 무작위로 3가지 등급의 혈청 중에 하나를 발행하였는데, 혈청을 마시면 돌연변이 원숭이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상위 등급의 혈청일수록 더 희귀한 돌연변이 원숭이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클럽 멤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BAYC 세계관의 확장과 더불어 클럽 멤버들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매력적인 NFT 대상 저작물이 없으면 이러한 흥행 요소도 잡기 어려웠을 것인바, 대상 아트는 이러한 NFT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대상 아트의 저작권 이용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유가랩스는 BAYC NFT를 가진 클럽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웹 폐이지 ‘Bathroom’을 멤버 전용 게시판으로 제작하였다⁹⁷⁾. 여기에서는 마치 화장실 벽에 낙서하는 것처럼 원하는 색을 이용해 15분마다 1픽셀을 낙서할 수 있는데, 암호화된 놀이 캔버스로 기능하며 커뮤니티 멤버의 공동 창작 실험이기도 하였다.

유가랩스는 이와 같은 온라인의 공동 문화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각종 도시에서 이른바 에이프 페스트(Ape Fest)와

95) CNET, Bored Ape Yacht Club NFTs Explained, 2022. 8.

96) 해시넷, ‘BAYC’, 2022. 5. 11. 마지막 편집

97) Morallis Academy, What is Bored Ape Yacht Club (BAYC)?, 2022. 5. 17.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요트 파티, 푸드트럭, 굿즈판매, 자선 만찬(Charity dinner)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멤버의 소속감과 NFT 및 해당 커뮤니티 가치를 높인다.

② BAYC NFT 보유자의 대상 저작물 활용

‘관리인 젠킨스’(Jenkins the Valet : The writer’s room)는 BAYC NFT #1798 구매자가 자신의 평범한 원숭이에게 젠킨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관리인이라는 직업과 스토리를 부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NFT 보유자의 상업적 지식재산권 이용 권리를 활용한 사례이다⁹⁸⁾. 젠킨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요트 클럽에서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부유한 다른 원숭이들의 온갖 추문들을 목격하고 비밀을 들었지만 이를 함구하다가 회고록을 쓴다는 컨셉이다. 해당 NFT 보유자는 상업적 이용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였는바, 젠킨스는 이를 트위터에 연재하였고 ‘Jenkins the Valet : The writer’s room’이라는 새로운 NFT 프로젝트를 발행하였으며, 책 제목, 장르, 줄거리, 일러스트 등 모든 집필 방향에 대한 투표권을 판매하였다. 이를 구매한 NFT 보유자 원숭이는 회고록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혜택도 있고, 책의 사본과 수익 배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BAYC NFT #8774의 보유자로서 형광색의 아디다스 저지를 입힌 캐릭터 인디고 허츠(Indigo Herz)를 만들고, 인투 더 메타버스(Into the metaverse)라는 NFT 프로젝트를 선보였다⁹⁹⁾. NFT 구매자들에게는 아디다스 오리지널, 후드티, 운동화 등 아디다스 실물과 디지털 상품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콜라보 굿즈, 메타버스 속 가상 토지, 메타버스 속 커뮤니티 참여 권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98) ABC News, How Bored Ape NFT Jenkins the Valet became a star with Hollywood backing, 2022. 12. 23.

99) 서울경제, 아디다스 NFT 사업 본격화…메타버스 캐릭터 공개, 2021. 12. 3.

(다) BAYC 의 홍행과 저작권 가치의 확대

미국의 유명 가수인 저스틴 비버, 스눕 독, 에미넴, 마돈나 등 셀러브리티들이 스스로 BAYC NFT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릴 정도로 BAYC를 소유하는 것은 BAYC 뿐만 아니라 보유자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었다. 즉, BAYC NFT의 소유는 곧 성공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와 각종 혜택은 커뮤니티를 단단히 하고 NFT 및 대상 아트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였다. NFT의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서 BAYC의 순매출은 10억 미국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일종의 멤버쉽 자격증이 된 BAYC NFT는 대상 저작물인 Bored Ape의 상업적 성공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이용에 관한 권리를 NFT 보유자들에게 과감히 인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매력적인 캐릭터마다의 스토리와 세계관이 시간에 따라 쌓여가며, NFT를 콘텐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거래 또는 투자 대상의 개념에 불과하던 NFT가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클럽 멤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펑크스 코믹, 햄버거 가게, 보어드 와인과 같이 오프라인 사업에도 마치 NFT의 대가로 브랜드 라이선싱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 BAYC NFT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BAYC는 NFT 보유자끼리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포함한 IP에 대한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적용함으로써 외원들의 활동 반경과 상업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커뮤니티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자신이 소유한 NFT인 BAYC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 저작권을 NFT와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에서 탈

피하여 해당 NFT 및 대상 아트에 대해 전속적인 라이선스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개개인 NFT의 고유성 활용은 물론 전체 프로젝트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거래 약관에서는 BAYC NFT를 사용, 판매, 관여를 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개인적·상업적 이용 등은 대상 아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NFT 매매 등으로 보유자가 더 이상 권한이 없어지면 이를 삭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위 웹사이트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일반적인 관점에서 BAYC NFT 보유자가 NFT를 매도할 경우에 유가랩스 또는 NFT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즉, 상점, 제품, 온라인의 각종 캐릭터, 관련하여 발행한 NFT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시작하는 NFT 관련 라이선스 사업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경업 관계 발생시의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BAYC 라이선스가 일반적인 브랜드 혹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달리 스마트 계약 및 거래 약관에만 따를 뿐 상세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발행자이자 지식재산권 권리자인 유가랩스도 특별히 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NFT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관할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3. NFT 플랫폼의 약관 적용 범위 :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 비교

정당한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에 의한 NFT 민팅 및 유통의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뿐만 아니라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를 검토할 것이다¹⁰⁰⁾.

100) 연구책임자 김찬동, 위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0., 106면

NFT를 발행·거래하는 각 플랫폼은 NFT 플랫폼 이용자가 NFT를 민팅하고 이를 거래하는 것을 지원하는 탈중앙화 방식이 있고, NFT 플랫폼 운영자가 NFT를 선별하여 업로드하면 이용자가 이를 구매하는 중앙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오픈시 등 많은 해외 NFT 플랫폼이 탈중앙화 방식을 택하고, 국내의 플랫폼들은 주로 중앙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중앙화 방식이 더욱 위법한 NFT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많이 부담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¹⁰¹⁾.

NFT 플랫폼은 보통 이용약관을 두고 이용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먼저 오픈시 및 국내 NFT 플랫폼의 약관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이들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 오픈시의 경우

NFT는 특정 NFT와 관련된 NFT 콘텐츠 및 혜택의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판매 조건이 설정될 수 있고, 당사자들이 판매 조건을 전달, 공표, 동의 및 시행할 책임을 부여하여 구매자가 ‘검토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Opensea는 사용자가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NFT를 직접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2P web3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²⁾. 이에 의하면 오픈시는 NFT 마켓플레이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상 디지털 자산을 NFT로 민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는 하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기발행된 이용자의 NFT 자산을 P2P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³⁾.

101) 한서희, “대체불가토큰(NFT)과 법률적 쟁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2022. 4. 29.), 31면

102) 현소진, 위 논문, 455면 이하

103) Opensea, Terms Of Service (Last updated: August 2, 2022), “OpenSea provides a peer-to-peer web3 service that helps users discover and directl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NFTs available on public blockchains.”

또한, 해당 서비스 약관에서, ‘NFT’란 특정 콘텐츠 또는 데이터에 링크하거나 달리 관련되도록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이더리움 블록체인 등)에서 구현된 대체불가능 토큰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아이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자체 전자지갑(wallet)은 없으나 전자지갑이 필요함을 규정한다(1조).

오픈시는 스스로 NFT 플랫폼일 뿐임을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인 자신이 아닌 오픈시 플랫폼을 이용하여 NFT를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NFT의 정체, 적법성 및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오픈시는 서비스 사용자나 NFT 대상 콘텐츠의 신원, 적법성, 기능 또는 진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으며 진술보증도 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1조, 5조).

한편, NFT의 거래로 이전되는 권리로서 이용자가 비독점적이고 개인적인 라이선스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에게는 판매, 재판매 등의 상업적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리 측면에서, 오픈시에 게시된 NFT와 연관되거나 연관된 대상 콘텐츠에 포함된 기타 모든 제3자 상표, 등록 상표 및 제품명은 그 소유자의 재산이며, 관련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모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은 두고 있다(3조). 또한 NFT와 연관되거나 연관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는 오직 해당 NFT의 관련 판매자 또는 창작자가 명시한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4조).

또한, 위와 같은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의 권리 침해신고-삭제 절차에 따라 게시중지를 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반복적 침해자의 경우 서비스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7조),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등 법적 책임 관련 규정(저작권법 제103조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를 교사 내지 방조하는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 조항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인바, 법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¹⁰⁴⁾ 실무례를 볼 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요청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제44조의 7 제1항 제9호). 다만, 오픈시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규제기관의 요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으며 법적 관할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

오픈시에서 SNS에 게시한 설명 자료¹⁰⁵⁾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는 판매자에게만 판매가의 2.5%를 청구하고 구매자에게는 청구하지 않으며, 번들 형식으로 NFT판매가 가능한데 30개까지도 가능함을 명시한다.

또한 공개된 오픈시 블로그¹⁰⁶⁾에는 NFT는 블록체인으로 소유권을 관리하는 고유한 디지털 아이템으로서 캐릭터블, 게임 아이템, 디지털 아트, 이벤트 티켓, 도메인 네임, 실물 자산의 소유권 등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 NFT가 민팅 가능한 표준으로 ERC-721, ERC-1155를 들고 있고, 온체인과 오프체인 중에 선택해서 NFT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오프체인 방식에 기할 때는 원출처에서 메타데이터가 사라질

104)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항소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없는 상태로 보임(서울고등법원 2016누35689, 대법원 2016두56639 판결)

105) OpenSea blog: 7 Reasons to sell your NFTs on OpenSea, 2020. 11. 27. (<https://twitter.com/opensea/status/1331990617631682562>)

106) OpenSea : The NFT Bibl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NFTs, 2020. 1. 10. (<https://opensea.io/blog/articles/non-fungible-tokens>)

위험이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오픈시는 호스팅 솔루션이 삭제되더라도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가 자체 서버에서 캐시된다고 한다. 또한 이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분산병렬 저장 시스템인 IPF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였다.

나. 슈퍼레어의 경우

또 다른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트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인 슈퍼레어는 주로 미술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오픈시와는 정반대로 플랫폼의 엄격한 큐레이션을 거친 작품만 선보이는 플랫폼이다. 약관¹⁰⁷⁾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슈퍼레어 플랫폼 게재 작품은 슈퍼레어에 의해 승인된 아티스트에 의한 것이고 원본 작품이 슈퍼레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민팅되며, 영구적으로 진본성과 소유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저장됨을 규정한다(Superare Items).

작품을 민팅하는 아티스트는 그 작품이 원본 창작품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개인적으로 창작한 작품만 민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Artist Agrees to Mint only “Original” Works). 아티스트는 작품을 판매, 전시하거나 작품을 민팅할 권한을 보유하며, 제3자와의 계약 위반이나 제3자에게 어떠한 부담을 지니고 있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조항을 두었다(Artists Must Have Authority to Mint, Display, and Sell the Work).

아티스트가 약관 위반으로 인해 SuperRare Labs에게 제기된 이의, 손해, 청구원인에 대해 SuperRare Labs의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도 두었다 (Artist Indemnifies and Releases SuperRare Labs). 또한, 아티스트와 이용자는 SuperRare Labs와 약관과 관련하여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

107) Terms of Service, Last Updated: Mar. 8, 2022

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SuperRare Labs를 영구히 면책한다고 규정한다(User Releases SuperRare Labs from Copyright Claims).

판매 대가와 관련하여 거래 당 슈퍼레어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는 판매가격의 3%이며, 1차 판매(Primary Sale)시에는 여기에 총 판매가액의 85%를 아티스트가 추가로 지급받고, SuperRare DAO¹⁰⁸⁾는 15%를 징수한다. 재판매(Secondary Market Sale)시에는, 아티스트는 재판매 구매자가 재판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액의 10%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SuperRare Labs Marketplace Prices & Fees) 이러한 로열티는 상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레어는 거래 작품 가격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진술,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SuperRare Labs Makes No Representations on Price or Value).

구체적인 구매자의 권리 관계는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NFT 구매자가 보유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창작 작품을 표상하는 암호화된 토큰 자체이며, 창작 작품 자체가 아니라고 한다. 구매자는 대상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공유함으로써 그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할 수 있는 등 명시적으로 라이선스 받은 범위를 제외하고, 대상 저작물의 법적 소유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아티스트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배타적인 저작권 등을 보유하며 복제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배포권을 보유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권리 를 가진다(Ownership of SuperRare Item).

아티스트는 구매자에게 제한적, 전세계적, 양도불가, 서브라이선스 불

108)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보임. 이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모든 결정 내지 서비스를 탈중앙화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을 의미함.

가, 무상의 전시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The Collector's Limited License to a Minted Artwork). 이러한 제한적 라이선스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상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시청각 작품의 경우 공연하는 권리와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i) 소셜 미디어 플랫폼, 블로그, 디지털 갤러리 또는 기타 인터넷 기반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구매자의 구매, 소유권 또는 이권을 홍보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목적, (ii) 대상 저작물을 공유, 홍보, 논의 또는 코멘트하기 위한 목적 (iii)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토큰의 판매 또는 거래 제안과 관련된 제3자 마켓플레이스, 거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경우 및 (iv) 탈중앙화 가상 환경, 가상 세계, 가상 갤러리, 가상 박물관 또는 하나 이상의 가상 환경 내에서 대상 저작물의 여러 사본을 동시에 전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타 탐색 및 인식 가능한 가상 환경 내의 경우 등이다(Collectors May Display the Artwork).

수집가는 예술품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기타 복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상 관람하게 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등의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은 할 수 없다(Collectors Shall Not Make Commercial Use of Artwork).

이와 같이 구매자는 작품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온라인상에서 과시하고 판매할 목적 외의 상업적 사용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슈퍼레어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자들은 기존 미술품 수집가일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리적인 소유와는 달름을 천명하면서 소유권도 유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는 약관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슈퍼레어에서도 우리나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유사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침해 신고 및 삭제 절차를 따른다(The DMCA Process and Procedure)고 하고 있어 동법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앴으며,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앞서 오픈시 약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규정, 정보통신망법 규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다. 업비트의 경우 (국내)

국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NFT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의 'NFT 이용 약관¹⁰⁹⁾'을 살펴본다.

NFT 이용 약관에서는 "NFT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뿐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각 NFT 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제2조 제3항)고 한다. 그러면서 제3조에서 "NFT 소유자의 권리"로서, 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¹¹⁰⁾"의 내용에 따라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부여된다고 한다. 또한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제3조 제1항). 이는 결국 NFT의 구매자는 NFT 외의 대상 저작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법적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그에 대한 NFT별로 특화된 이용 권리를 라이선스 받는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두나무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단, 두나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두나무가 책임을

109) 2022. 2. 21. 개정본

110) 업비트 NFT 이용 약관은 이러한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NFT를 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제3조 2항).

부담한다고만 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 주식회사('람다256')가 운영하는 루니버스 체인의 Luniverse NFT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으로서, "NFT 발행인"은 "람다256"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NFT를 발행하며, 상기 방식으로 발행된 NFT는 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이더리움 ERC-721 지갑으로는 전송되지 않는다(제4조 제1항)고 하여 기술적인 바탕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람다256이 루니버스 체인 Lunivers NFT 프로토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NFT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부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중개 서비스가 종료된 NFT를 보유한 자는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두나무와 "람다256"은, NFT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시점의 NFT 소유자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 원본 파일을 종료 일로부터 적어도 삼십(30)일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 NFT 소유자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개인 저장 공간(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한 개인 SNS, 웹클라우드, PC 등)에 저장하는 등 개인 소장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3항). 이 조항은 특유한 조항인데, 기술적인 사유로 NFT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도 플랫폼 차원에서 NFT 및 대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NFT 구매자를 보호하여 주는 규정으로 보여 NFT 이용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구매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은 디지털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거나,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회원과 통정하여 매매하는 등으로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할 경우 두나무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시정요구, 이용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제5조 제2항)다고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한

다.

두나무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두나무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나무는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NFT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을 따르는 내용을 규정하며 나아가 재개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이와 같이 NFT 이용 약관에서는,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두나무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하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4조 제2항 상 두나무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NFT 플랫폼으로서의 일응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요약 및 시사점

이들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NFT 및 이에 연계되는 디지털 저작물을 거래하는 것을 작품 거래 구조로 하여 회사들은 개별 마켓 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시킨다. 또한 플랫폼 회사는 거래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NFT에 의하여 디지털 작품도 고유화되거나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인다. 예컨대, 업비트 이용 약관에 의하면, NFT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상표권 등과

보유자가 갖게 되는 소유권 혹은 유사 권리라는 독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유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시 등 이용 관련 라이선스를 별도로 부여 받는 것으로 한다. 재판매 수익의 일부(예컨대 10%)를 작가에게 귀속시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4. NFT 거래 플랫폼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법적책임 적용 여부

민팅을 진행하는 NFT 거래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저작물을 전송받아 NFT를 민팅하고 거래를 중개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중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중 저장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¹¹¹⁾. 다만 NFT 거래의 법적 성격 규명과 플랫폼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아직 확립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인바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서 NFT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판결이 2022년 4월에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가. 중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판결 (항저우인터넷법원)

(1) 사안의 개요

중국에서 유명한 만화가 마치안리(Ma Qianli)는 2021년 12월 16일 자신의 위챗 SNS 계정 및 2022년 1월에 ‘살찐 호랑이가 산을 내려오다’라는 서적에서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야’ 시리즈 작품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위 시리즈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저작재산권과 소송권리를 수권

111) 김찬동, 위 보고서, 112면

받았는데, 피고 회사(Bigverse)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NFT 플랫폼(NFTCN)에서 어느 이용자가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 그림(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는 NFT를 발행하여 899위안에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¹²⁾. 이 NFT 디지털 작품은 마치엔리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올린 삽화와 정확히 일치하며, 우측 하단에 마치엔리의 웨이보 위터잉크까지 표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NFT 디지털 작품의 권리 귀속에 대한 사전 심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작품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과 지출비용의 합계인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작품을 민팅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단지 사후 심사의무만 부담할 뿐이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NFT를 이터 주소로 보내 소각하였으므로 통지-삭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작품 NFT의 구체적인 블록체인 등의 위치와 관련 스마트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법률에서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2022년 4월 20일, 중국의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NFT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관적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이 사건 NFT를 즉시 삭제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적정 비용을 합한 4천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 원고 적격의 문제

112) 한국저작권보호원, NFT플랫폼의 사전 심사의무를 인정한 중국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C-Story 2022년 12월호, 19면

예술가 마치안리는 원고와 사이에 저작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위 저작권법 등 법령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는 예술가 마치안리이며, 사용권자는 이사건 원고이므로, 원고 적격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저작권법상 NFT디지털 파일의 거래 성격

법원은 NFT 디지털 파일을 거래하는 데 있어, 먼저 NFT 제작, 등록 등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제작의 경우 다시 NFT에 대한 복제, 판매 및 온라인정보전송이라는 3가지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① 디지털 파일을 NFT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 ② 판매 목적으로 NFT 플랫폼에 제품을 전시하는 행위, ③ 전시된 NFT를 선택하여 디지털 자산 지갑을 통해 대금과 수수료를 지불한 후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취득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법원은,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며, 각 NFT파일이 다른 숫자의 꼬리표가 붙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서로간 구별되고,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며 유일성,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NFT로 제작한 디지털 자산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즉시 구체적이고 유형(有型)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NFT거래의 본질은 사실상 디지털 제품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고,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재산권 매매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는 암호 코드의 형식으로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가상 재산(NFT)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일정하게 지배(점유, 사용, 수익, 처분 등)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NFT 거래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사용권 부여 또는 저작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과 관련

된 거래에는 저작권법상 라이선싱이나 저작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NFT는 '여러 사본 가운데 원본을 골라 가치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아직까지 NFT로 만든 원본 증명서는 말 그대로 '원본 증명'일 뿐 저작권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NFT를 구매하여 원본을 소유했다고 증명할 수는 있어도, 합법적 저작권에 따라 그 원본을 독점적으로 복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재 저작권법상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거래 자체의 불법적인 성격을 떠나서 NFT가 실제로 거래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사용권은 얻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 작품을 도용하여 만든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은 이 사건 이용자에 의해 가령 A라는 사람에게 판매했다고 하고, 실제로 독점적 사용권은 진정한 저작권자인 예술가 마치안리에 의해 원고에게 부여되었다면, A는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을 소유하고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원본의 사적 이용(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 이를바 소유권 유사한 권한을 취득하는 부분조차도 문제가 있는 사례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온라인정보전송권은 온라인 플랫폼 등 일정한 형태가 갖춰진 매체를 통하여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의미한다. 법원은 위 관련 규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생성, 제공된 점에서 일반 저작물과 다르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 재산으로 보아, 이를 제작하여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거래 대상이 불특정 다수 개인으로, 모든 거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 집행되고, 공중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NFT 가상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해당 행위는 온라인정보전송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이용자들의 NFT제작 행위는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원고의 온라인정보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최초 판매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는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NFT 플랫폼 운영사 피고의 법적 성격과 법적 책임

NFT 플랫폼 운영사인 피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는 NFT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전파보호조례가 정하는 ‘자동 접속, 자동 전송, 저장 공간, 검색 링크, 파일 분석 기술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NFT 전문 플랫폼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항저우인터넷법원은 NFT 디지털 파일의 특수성, 새로운 거래 특징, 채용한 기술, 플랫폼에 대한 통제 능력, 수익 모델 등 측면에서 그 운영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 이용자가 NFT거래에서 NFT 디지털 파일을 생성하여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통상적 의미의 “복제” 및 “온라인정보전송”에 해당하므로, NFT제작자는 저작권자 본인 또는 수권 받은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피고는 NFT 디지털 작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NFT 플랫폼에서의 NFT 디지털 작품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NFT 파일의 합법성과 진실성에 대한 심사 의무를 부담한다. 즉, 피고는 새로운 NFT거래의 본질과 특징을 잘 이해하여 전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플랫폼의 경우 NFT제작이 당해 플랫폼에서 이루어졌고,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전에 피고의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심사대상제품 ('UGC')이 일반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단일 작품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의 경우, 사실상 그림 한 장에 우측 하단 Watermark로 날인한 예술가 마치안리의 이름 사인까지 찍혀 있어 진위 심사하는데 수월한 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NFT 플랫폼이 NFT 디지털 작품에 대해 비교적 강한 통제 능력(가능성)이 있고, 상응하는 심사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통제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는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해 자사 플랫폼에서 NFT로부터 가스비나 수수료 등을 받아 직접 수익을 내기 때문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에 의하면,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 행위를 막는데 비교적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플랫폼에 업로드된 NFT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작권 심사 매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NFT 플랫폼이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의 소각(삭제) 항변에도 불구하고 삭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심사의무까지 부담하는 정도의 높은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판시한 요소들이 기존의 일반 인터넷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 부

분에 대해 판시가 빈약해 보인다.

한편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이와 같은 판시 외에도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이 인민폐 899원(한화 약 18만원)에 단 한번만 판매되었고, 당사자들이 손실액과 취득 이익에 대한 입증도 모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NFT 디지털 파일 자체의 가치 및 거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민폐 4,000원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다.

(5) 중국 판결의 시사점

NFT 플랫폼에서 무권리자가 민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NFT 존재 사실을 알리고 플랫폼이 해당 NFT를 삭제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무단 NFT를 구매한 자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은 플랫폼에서 NFT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고, 해당 NFT 플랫폼이 저작권 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심사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NFT 플랫폼의 사전 심사의무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규정 도입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기존 저작권법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은 문제가 된 특정 NFT 플랫폼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NFT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NFT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 자체가 외부에 있고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실제 문제가 되는 침해 저작물의

삭제가 기술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다. 즉, NFT 플랫폼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을 기술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발간한 NFT 거래 관련 안내서¹¹³⁾에서는 거래소에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에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저작권 등록증, 등록번호, 이용허락서, SNS 연동 등)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는바 그 간극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내서를 참고로 권리조치를 반영해 되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NFT 거래 당사자와 저작권자 등의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입법 방향성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적용 여부 관련 검토

앞서 4. 서두에서 살핀 바와 같이 NFT 플랫폼 구매자, 판매자가 스스로 보유한 NFT 파일을 직접 거래하는 P2P 방식의 플랫폼의 경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¹¹⁴⁾.

NFT의 거래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메타 ‘데이터’의 거래이지 대상 저작물 자체의 거래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NFT 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방식으로 생각되는바, 마켓플레이스가 기술적으로 통제권을 갖거나 삭제를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NFT 플랫폼으로서의 마켓플레이스가 이용자들에게 서버를 제공하여 NFT 거래 수행을 위한 수수료(Gas Fee)를 상회하는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받아 거래 플랫폼 제공을 통하여 직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이 발견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113) 문화체육관광부 외, NFT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11면, 2022

114) 혼소진, 위 논문, 455면 이하

마켓플레이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전제하는 경우 이용자들에 의해 NFT 발행 등에 있어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최소한의 Take down 관련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무권리자의 민팅이 일어나는 등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을 관리하므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NFT 발행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필적 인식 혹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FT 마켓플레이스는 앞서와 같은 면책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일방적인 약관의 성격을 띠어 여전히 저작권 침해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 시점에서의 1차적인 침해 여부 판단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해를 되돌리기도 어려운 것이 NFT의 특징이므로 정부가 권유하는 것과 같이 스마트 계약으로 NFT가 거래가 될 때 계약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저작자의 서명 혹은 저작물마다 개인키와 같은 인증번호를 각자 부여하여 이를 인증하는 방식 등을 전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봄직할 것이다.

제 4 장 결론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유무형의 자산에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¹⁵⁾. 이더리움(ERC-721)이라는 가상화폐의 특정 형식에 따르면서도 대체불가능하다는 독창적인 특징을 보유하는 NFT는 벌써 메타버스, 수집형, 예술형, 엔터테인먼트, 게임, 출판업 등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고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저작권의 개념으로 일의적으로 결론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산업계의 핵심이 되어가는 콘텐츠 문화들이 저작권과 불가분에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NFT 및 그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관점에서의 논의 및 분석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다만 데이터 혹은 코드라는 기술적인 측면의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존의 법리로 해석 내지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적절히 도입한 맞춤형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NFT 마켓플레이스가 스스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임을 약관상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희망적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적용 가능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위 유형 외에 NFT화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산업 및 해외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유연한 사고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15) 김현경, 위 논문, 394면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논 문

현소진, NFT의 발행 및 저작권적 쟁점의 논의, 경영법률 제32집 제2호,
2022

윤종수·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합의와 법적 보호, 법조
제70권 제6호(통권 제750호), 2021

정진명, 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학 제100호

신봉근,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 제727권 2018. 2,

김현경,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제28권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단행본

아모 겐스케·마사다 마사후미 외, NFT로 부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
알에이치코리아

김보름·옹호성, 뮤지엄에서의 NFT 활용 현황과 전망, 박물관학보, 2022.6.
연구책임자 김찬동,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1.,

보고서/기고문

김시호,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KISA Report, 2021. 8. 11.

노경탁, NFT,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유진리서치센터, 2021

김형지, NFT 저작권 관련 산업의 해외 사례와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Vol.35,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오혜민, 블록체인 기업 ‘Galaxy’, NFT 라이선스에 대한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 제1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최재식 외,
2021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라쿠텐, NFT 마켓플레이스 및 판매 플랫폼
‘Rakuten NFT’ 서비스 제공 개시, 2022-10권호,
2022. 3.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NFT 활용방안(1), KOFAC
FOCUS

한서희, 대체불가토큰(NFT)과 법률적 쟁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2022. 4. 29.)

한국저작권보호원, NFT플랫폼의 사전 심사의무를 인정한 중국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C-Story 2022년 12월호

외국 문헌

Aaron Wright & Primavera De Filippi, DECENTRALIZED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RISE OF LEX CRYPTOGRAPHIA [12-Mar-15]

David Schatsky and Craig Muraskin, Beyond Bitcoin: Blockchain is Coming to Disrupt your Industry,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5

Shanti Escalante-De Mattei, NFTs Recognized as Property in the UK Following OpenSea Case, Artnews, 2022. 4. 29.

Nick Szabo, Smart contracts in Essays on Smart Contracts, Commercial Controls and Security, 1994

Complaint, Roc-A-Fella Records Inc. v. Damon Dash (New York Southern District Court, June 18, 2021)

기고문/기사

Hoopshype, The most expensive NBA Top Shot moments so far, 2021. 3. 18.

COINTELEGRAPH, Russia's Hermitage museum to host NFT art exhibition, 2021. 3. 26.

COINTELEGRAPH, Why the world's largest museum is embracing NFT technology, 2021. 12. 10.

e-flux Announcements, Proof of Art, Francisco Carolini Linz, 2021. 8. 11.

CISION PR Newswire, Glory Star Announces Signing of Cooperation

Agreement With Beijing Minsheng Art Museum for NFT Applications, 2021. 4. 22.

ABC News, Artists report discovering their work is being stolen and sold as NFTs, 2021. 3. 16.

Coin Post, 人氣アイドルグループ「SKE48」のデジタルトレカが即完賣 イーサリアムERC721を活用, 2020. 10. 5.

Coin Post, コインチェックNFT、アイドルグループ「SKE48」の限定デジタルトレカ販賣へ, 2021. 6. 10.

STEPHEN M. LEPORE, Mail Online, Look familiar, Donald Trump is accused of using copyrighted images in his NFT collection with 'fighter pilot outfit and cowboy costume from Amazon and Walmart photoshopped on to his trading cards', 2022. 12. 19.

Jing Daily, NFTs Are Shaking Up China's Art Scene, 2021. 5. 29.

Rolling Stone, Kings of Leon Will Be the First Band to Release an Album as an NFT, Samantha Hissong, 2021. 3. 3.

the Cryptonomist, SIAE: “Abbiamo scelto Algorand perche non consuma tanta energia”, 2021. 4. 18.

Bloomberg, NBA Stars Lining Up to Become Backers of New Blockchain Project, 2020. 8. 6.

VentureBeat, CryptoKitties explained: Why players have bred over a million blockchain felines, 2018. 10. 6.

NFT News Today, SEGA Announces it Will Sell NFTs in Summer 2021, 2021. 4. 27.

GAMERANT, Sega's New Blockchain Game is Doomed to Repeat History, Anna C, 2022. 9. 30.

Coindesk Japan, 電子書籍を古本として賣れる？NFTをブロックチェーンで管理、二次流通市場の創出へ——Gaudiyなどが實証實驗；, 2020. 7. 15.

Bianca Lessard, NFTs, Minting and Copyright: what you should know as an artist, Reno & Co

Jessica Rizzo, The Future of NFTs Lies With the Courts, 2022. 4. 3. Wired.com

CNET, Bored Ape Yacht Club NFTs Explained, 2022. 8.

Morallis Academy, What is Bored Ape Yacht Club (BAYC)?, 2022. 5. 17.

ABC News, How Bored Ape NFT Jenkins the Valet became a star with Hollywood backing, 2022. 12. 23.

Abstract

NFT and Copyright

- In terms of NFT practice and transactions

Hyungji Kim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opyright has always been an issue for NFT, which has become an inseparable issue of the world's industrial trend since 2020 during the COVID-19 era, but there was no chance to deeply review the legal issu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NFT is technically issued by Ethereum's ERC-721 standard and has the legal nature of property, proof of title, and online asset. The examples of NFT issuance overseas are divided into seven types: metaverse, collectibles, art, entertainment, game, publishing, and defi.

When NFT is issued, minting will be conducted using smart contracts and metadata, and the scope of use of NFT and the target copyrighted works wi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r by terms of use.

As in the U.S. case of Miramax v. Quentin Tarantino, regarding unauthorized NFT minting, production agreements were executed without considering NFT, and it is likely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 will determine to which party the copyright, etc. will belong to.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opyright restriction regulation can be considered, when copying of the underlined work may occur when minting without authorization.

In many cases,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copyright under civil law is not applied to NFT, and study is also needed on the rights of NFT issuers and holders.

You can also look at the BAYC transaction structure and its terms that create value by freely commercializing the undeline works. You can also look 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amous NFT marketplaces in Korea and worldwide and find a general form that mainly regul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can also be seen that NFT marketplaces acknowledge that the liability provis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can be applied under the DMCA or the Korean Copyright Act.

Further, regard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o NFT marketplace operators,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recent ruling of the Hangzhou Internet Court in China an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y part of it in Korea.

keywords : NFT, Copyright, NFTpracticeabroad, NFTLicense,
BAYC

Student Number : 2011-21451